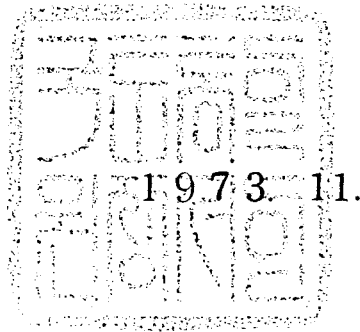


6·23 宣言에 따른 統一政策  
推 進 方 案



國 土 統 一 院



이 報告書는 國土統一院 73年度 下半期  
學術用役に 關한 最終 報告書로 提出합니다

1973. 11.

研究機關：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附設 行政調查研究所

研究委員：姜 信 澤  
金 光 雄



# 目 次

第 1 章 序 論 .....	3
第 1 節 研究目的 .....	3
第 2 節 研究範圍 .....	4
第 3 節 研究方法 .....	5
第 2 章 從來的 統一政策 .....	6
第 3 章 6.23 宣言의 解釈 .....	14
第 1 節 6.23 宣言의 背景 .....	14
第 2 節 6.23 宣言의 解釈 .....	16
第 3 節 6.23 宣言의 內容과 問題點 .....	25
1. 平和統一原則 .....	26
2. 內政不干涉 不可侵 .....	27
3. 南北對話 .....	29
4. 南北韓 同時 UN 및 國際機構加入 .....	31
5. 門戶開放 .....	33
6. 友邦과의 紐帶 .....	34
第 4 章 6.23 宣言의 推進方案 .....	36
第 1 節 平和共存政策 .....	36
1. 平和共存의 概念 .....	36
2. 平和共存의 理念的 要因 .....	38
3. 平和共存의 狀況的 要因 .....	42

4 . 南北韓 平和共存 可能性 一 評價 .....	44
5 . 平和共存의 制度的 保障 .....	46
6 . 南北韓 同時 國際機構加入 展望과 戰略 .....	53
7 . 國際機構를  통한 平和共存效果 .....	57
第2節 對UN 政策 .....	58
1 . UN 과 統韓問題의 性格 .....	58
2 . UN의 分斷國問題 處理類型과 韓國問題 處理 展望 .....	61
3 . UN에서의 韓國問題 處理展望 .....	62
4 . UN에서의 韓國統一 接近方向 .....	65
第3節 門戶開放政策 .....	66
1 . 韓國外交의 基本方向 .....	67
2 . 對蘇外交政策 .....	70
3 . 對中共外交政策 .....	74
4 . 對中立國外交政策 .....	78
第4節 南北對話의 推進方向 .....	81
1 . 6.23 宣言의 解釋에 비추어본 南北對話의 意義 .....	81
2 . 南北對話의 推進方向 .....	83
第5章 結 論 .....	85

# 第 1 章 序 論

## 第 1 節 研究目的

8.15 解妨以後 오늘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의 統一政策은 여러 側面에서 檢討되어 왔다. 그것은 특히 70年 8月 15日 朴大統領의 歴史的인 「8.15 宣言」을 비롯하여 그후 여러차례 南北韓接觸을 通하여 보다 具體的이고 積極的인 立場을 取하게 되었다.

이 같은 努力의 中間結果로 分析 四半世紀만에 처음으로 歴史的인 南北赤十字會談과 南北調節委員會의 會談이 서울과 평양에서 開催된 바 있으나 南北間의 對話는 初期의 부풀었던 期待와는 달리 좀처럼 실마리가 풀리지 않았고 對話에 대한 회의만 더하여 왔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南韓은 積極的이고 希望的인 統一方案을 樹立 지속시키면서 우리의 統一에 대한 必要性을 國內外에 웅변하여 왔음은 周知의 事實이다.

그하나의 획기적인 結晶이 바로 朴大統領의 지난 6月 23日에 行한 平和統一 外交政策에 關한 特別宣言인 것이다.

그렇지만 이 平和統一宣言이 從來의 統一政策을 완만하고 평이한 境地로 끌어들이는 것은 決코 아니라고 본다.

이 平和宣言은 오히려 우리에게 보다크게 緊요한 努力을 經주하도록 要請하고 있으며 따라서 過去와는 다른 次元에서의 研究와 努力의 必要性을 절감시키고 있다.

다시 말해서 지금까지의 統一을 위한 諸方案이 주로 国内的性格을 지닌 것이었다면 同平和宣言은 國際社會를 向하는 擘으로부터의

때동으로 그 性格조차도 過去와는 判이해된 것이다.

따라서 同宣言에 따른 統一政策의 推進方案은 또 다른 角度에서 檢討되어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同宣言이 對外的 性格의 것이라 하여 国内的 次元을 完全無視하는 것은 아니며 同宣言 第 2. 3 項에서 南北關係에 對한 基本態度를 明示한 바와 같이 從前의 7.4 共同聲明에서 南北間에 合意된 統一의 三大原則은 그대로 存続하는 것이기 때문에 同宣言의 根本的 性格은 對內的 統一基盤造成의 成熟과 同時에 對外的 諸要因을 能動的으로 透視한 巨視的 統一政策으로 理解하여야 한다.

따라서 同宣言의 推進方案이란 첫째로 對內的 統一基盤造成을 爲한 諸方案과 둘째로 國際政治秩序를 如何히 分斷 統一秩序에 調和시킬 것인가의 諸方案을 綜合적으로 講究하여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方案을 모색하기 爲하여 同宣言이 지니고 있는 意味가 무엇이며 그것이 實際社會에서 어떠한 實現性을 가져올 것인가도 檢討하여야 할 것이다.

本論文은 以上の 몇 가지 點을 考慮하면서 6.23 宣言의 現實的 妥当性을 규명함과 동시에 理論的인 分析和 具體的 推進方案을 모색함에 그 目的을 둔다.

## 第 2 節 研究範圍

6.23 宣言은 對內, 對外的 二重的 統一政策이므로 그의 推進方案도 두가지 서로 다른 側面을 同時에 講究하여야 한다.

따라서 同宣言이 지니고 있는 範圍 안에서 對內政策과 아울러



對外政策을 고찰한 것이며 時間的으로는 6.23 宣言 이후의 것을 考察할 것이나 理解를 돕기 위하여 從來의 統一政策도 서술한다. 여기서 對內政策과 對外政策을 함께 考察한다 함은 6.23 宣言의 推進方案을 韓半島內的 次元과 國際政治的 次元이라는 同時的 視角에서 分析 提示한다는 意味를 지니는 것으로 理解한다.

### 第 3 節 研究方法

統一政策에 關聯된 國內外 文獻 및 資料를 中心으로 6.23 宣言의 論理的 解釋과 現實的 妥當性을 究明하고자 하며, 過去의 統一政策에 對한 史的 考察과 他分斷國家와의 比較論的 接近方法도 部分的으로 適用코자 한다.

이에 부수적으로 서울대학교 行政大學院 非公開 세미나에서 討議된 內容을 發展시키는 方法도 참가하였다.

## 第 2 章 從來的 統一政策

韓半島分斷以後 70年代 以前의 統一政策은 南北間 單一化를 爲한 努力으로서 反共, 勝共, 赤化를 標榜하면서 我方体制의 肯定과 他方体制을 否定하는 武力的 方法을 비롯하여 名目上 平和的인 統一獨立된 民主韓國의 建設이라는 統一原則下에 政治的 合法性을 固守 내지 획득하기 위한 体制相互間의 政治的 名分鬭爭에 이르기까지 數 많은 對內外的 努力이 傾注되어 왔다.

이 같은 努力의 過程에서 볼 수 있었던 統一論은 北韓總選을 主張하는 單選統一論을 비롯하여 協商統一論, 武力統一論, 南北交流論, 南北總選論, 中立化統一論 등으로 나타났다. (註 李 讚九, 三段階統一對策, 「노벨」文化社, pp-253 ~ 297)

그러나 이와 같은 諸統一論은 융통성이 없고 非妥協的이며 實効性이 없는 한갓 理想論에 不過한 것으로서 政策動機의 側面에서 評論할 때 統一政策 關係變數로서 國際情勢 韓國內部 및 北韓內部 情勢를 充分히 考慮치 않은 平面的 統一論에 不過했던 것이다.

이러한 從來의 韓國統一政策의 成熟過程은 國內政權史의 側面에서 或은 國際政治 展開過程에서 段階別로 考察할 수도 있으나 여기서는 便宜上 時代別로 1945 ~ 1959년까지를 第1段階, 1960 ~ 1969년 까지를 第2段階, 그리고 1970年 以後를 第3段階로 区分하여 考察하고자 한다.

( 第 1 段階 ) - 1945 ~ 1959

8.15 解放以後 1948 年 政府樹立時까지의 統一政策은 世界第 2 次 大戰의 終結에 따르는 戰後處理問題와 이에 關聯된 「카이로」宣言과 「포스담」約束에 依하여 美・蘇間의 相互된 힘의 均衡에 依하여 發生되었던 것이기 때문에 同期間의 統一政策은 考察할만한 것이 못된다. 따라서 政府樹立後부터 意味있는 考察對象이 된다고 볼 수 있겠다.

政府樹立後의 大韓民國政府의 統一政策은 한마디로 單選統一 乃至 北進統一이라는 戰爭과 平和의 二重의 構造를 取하였다.

1948.5.10 UN 決意에 따라 UN 임시한국위원단의 監視下에 南韓 地域에서 200 여명의 制憲國會議員이 選出되었고 同年 8.15 歷史的인 大韓民國政府가 樹立되자 이때부터 大韓民國政府의 統一政策을 確立하게 된 것이다.

1948.8.15 政府宣布文에 나타난 統一政策을 보면 첫째로 大韓民國政府는 韓半島에서 主權을 가진 唯一한 合法政府이며 둘째로 選舉가 保留된 北韓地域에 速히 民主選舉를 實施할 것과 셋째로 北韓同胞의 自由意思가 계속 봉쇄되는 경우에는 韓國政府는 全韓半島에 있어서의 唯一한 合法政府의 權能으로 武力에 依해서라도 北韓에 對한 主權을 회복할 것이라고 宣言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北韓의 總選에 依한 韓國統一을 主張하였던 것은 UN 현장의 정신이나 國際法上的의 法理的 根拠等으로 미루어 볼때는 일응 合理的이며 正當한 主張이었다고 볼 수 있으나 實現可能性은 매우 희박하였던 것이다.

6.25 事變前까지 北韓側이 수차례 걸쳐 統一提議를 하여 왔으나 大韓民國은 唯一한 合法政府라는 데서 不法集團인 北韓이 이에 吸收되는 것만을 原則으로 삼았다. 즉 北韓地域만 UN 監視下에서 選舉를 實施하여 兩韓과 합치는 方法外에는 어떠한 統一方法이 있을 수 없었던 것이다. 그러나 1950年 北韓의 不法兩侵으로 인한 6.25 事變을 치른 後에는 事情이 달라지게 되었다. 1954年 「제네바」 政治會議에 제기된 韓國統一方案은 從前의 北韓地域單選論과는 달리 「南北韓 同時에 選舉하되 大韓民國의 憲法節次에 따라 UN 監視下에서 토착인구의 比例에 따라 國會議員選舉를 한다는 것이다. (註 1954. 「제네바」會議에 當時 外務部長官 卞榮泰長官이 제기한 韓國統一方案)

그러나 「제네바」政治會談이 決裂되자 自由黨政府는 다시 중전의 統一政策을 채택하였다. 즉 당시 大韓民國政府는 武力에 依한 北進統一政策을 고수하는 한편 UN 監視下의 北韓地域의 總選舉를 主張하는 UN 監視論을 主張하였던 것이다.

武力統一論은 주로 国内的인 것이었고 UN 監視下의 北韓만의 總選舉는 對外的인 것이었다. (註 國際問題, Vol13.(No.1) 國際問題研究所, 72.1. pp.38~40)

當時 大韓民國内에서는 北韓과의 協商이라 하면 어떠한 제안도 커다란 의혹을 받았으며 심지어 平和統一이라는 말조차 容납되지 않았던 것이다. 曹奉岩의 進歩黨은 선거구호로서 平和的 統一論을 標榜한 이유로 「容共者」 「國是違反者」로서 규탄받았고 1958.2.25日 進歩黨을 解体하게 된 事實이 이를 証言하고 있다.

( 註 民主黨의 조병옥 최고위원도 「제네바」會談에서 卞榮泰長官의 발언취소 운운 主張으로 因是違反与否로 問題된 바 있다. )

이와같은 自由黨政府의 統一政策은 戰後處理의 合意事項을 둘러싼 美蘇間 対決과 그를 통한 UN의 결의등 國際政治上的의 복잡한 衝突要因들이 얽혀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50年代 後半부터 나타나기 시작한 초강대 勢力間의 緩和趨勢를 보이는 國際情勢의 變化와 北韓의 經濟的 증진을 보인 상태하에서는 大韓民國의 그와같은 立場은 实效性이 없는 것으로 나타나는 것은 不可避했던 것이다. ( 註 四大強國과 韓半島의 關係, 國土統一院 1973.p.212)

#### ( 第2段階 ) - ( 1960 ~ 1969 )

1960年 4.19 의거에 依해 李政權이 무너지고 民主黨이 執權하게 되자 종전의 武力使用에 의한 統一原則은 포기되었으며 平和的인 方法으로 統一을 達成하겠다는 平和統一政策을 채택하였다. 當時 外務部長官 鄭一亨氏는 同年9月10日 「北進統一같은 무모한 「스로전」을 지양하고 UN決議를 존중하여 UN監視下에 南北韓을 통한 自由選舉에 依한 統韓政策을 수행한다는 聲明을 發表하였으며 同年 11.2日 國會는 第15次 UN總會에 「統一獨立, 民主韓國」을 樹立한다는 UN의 基本原則에 따라 國民의 自由와 國家의 安全이 恒구히 또 확고히 보장될 수 있는 조치를 강구하고 大韓民國 憲法 절차에 의해 UN 감시하에 土着人口의 比例에 依한 自由選舉를 실시할 것을 촉구하는 決議案을 채택 民主黨政府의 統一原則을

再闡明하였다.

1960년부터 61년까지의 民主黨政府의 統一政策은 「제네바」  
政治會談에서 제시했던 統一方案으로 되돌아간 셈이다.

◀ 1961年 5.16 革命以後 第3共和國은 先建設 後統一이라는 勝共  
統一政策을 60年代末까지 10여년간 고수해 왔다.

5.16 革命後 政權을 인수한 軍事革命委員會는 革命公約에서 反  
共을 國是의 第1로 삼는다 하고 統一을 爲해 共產主義者들과  
對決을 爲해 大韓民國의 国力을 배양해야겠다는 基本方向을 제시  
하였다.

當時 外務部長官 金弘壹씨는 「우리는 武力에 依한 國土統一을  
願하지 않으며 平和的 方法으로 統一을 추구하여 UN 감시하의  
南北韓 總選舉를 실시할 것을 강조한다」고 밝혔으며 朴正熙 最  
高會議議長은 同年 6.25日 「UN 16次 總會에서의 韓國問題討議  
와 解決에 대한 從來의 政府方針에는 하등의 變化가 없다고 언  
명함으로써 政府의 統一方針을 再確認하였다.

1963.12.27 樹立된 第三共和國은 UN 監視下의 自由民主主義 原  
則에 입각한 「南北韓 總選舉」 自由世界의 基本秩序하에 國土統  
一등을 채택했다.

1964.1.10. 朴大統領은 年頭敎書에서 「外交政策에 있어서는  
UN을 통해서 自由民主主義 原則에 따라 統一을 達成할 수 있도  
록 積極的인 外交活動을 展開할 것이며 변천하는 國際情勢에 대처  
하여 統一을 위한 諸般問題에 對備하는 研究와 態度를 갖추어  
나갈 것이다」고 民主共和黨의 統一方針을 피력했다.

그후 一貫하여 UN 감시하에 土着人口比例로 南北韓 自由選舉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主張했으며 統一을 위하여는 祖國近代化를 서두르고 經濟建設에 拍車를 加하여 統一問題의 본격적 論議는 70年代 後半期가 될 것이라는 展望도 아울러 追求했다.

이와 같은 UN에 의한 韓國統一 方案은 政府樹立 以後부터의 問題지만 第3共和國 역시 이를 계속 對外的 統一政策으로서 채택 하였던 것이다.

1960년부터 69년까지 10여년 동안의 國際政治樣相은 중전의 韓半島 問題를 둘러싼 美·蘇間의 對峙상태에서의 現狀維持 對策의 段階로서 大韓民國은 비교적 外交面에서 對 UN 關係에서 北韓보다 有利한 高地를 確保하고 있었던 것이다. (文昌周 國際政治속의 韓國政治發展論 國民出版社, p.56)

그러나 70年代에 접어들어 北韓의 계속적인 平和攻勢 國際情勢의 變化等으로 從來의 統一政策은 획기적인 變化를 가져오게 되었다.

(第 3 단계) 1970 ~

70년 8월 15일 朴大統領은 소위「8.15宣言」에서 5천만 민족의 利益을 위하여 同族相殘의 悲劇을 피하여서 平和의 方法으로 統一을 이룩할것과 北韓에 대하여 開發과 창조의 善意의 경쟁을 提議하였다. 4個項으로 構成된 동선언은 北韓으로 하여금 武力赤化統一論을 포기하고 平和的인 競争과 共存을 하자는 것이며, 統一問題에 대하여 能動的이고 伸縮性있는 立場을 取하겠다는 것을 意味하는 것이다.

71年 8.12日에는 大韓民國 赤十字 총재 최두선총재로부터 國土分斷에 기인하는 民族的 고통을 단계적으로 해소하기 위해 1千萬 離散家族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南北赤十字 會談을 提議하였고 北韓이 이를 수락함으로써 南北關係는 4半世紀에 걸친 對話없는 對決의 關係에서 對話있는 對決의 時代로 접어들게 되었다.

同年 8.31 金溶植 外務部長官은 記者會見에서 南北問題 解決에 있어서 三段階論을 提示하였다.

즉 北韓의 무력도발의 완전포기를 전제로 하고 단계적인 대북접근방법을 표명한 것으로서 첫째로 人道的 問題로 離散家族찾기문제를 원만히 해결한 다음에 둘째로 非政治 分野인 經濟·文化·體育 등의 交流를 하고 셋째로 政治問題를 解決하자는 漸進的 解決等을 提示한 것이다.

이와같은 韓國의 積極的이고 能動的인 平和統一方案에 對한 새로운 提案은 곧 北韓側의 반응을 유발하여 일련의 南北고위회담을 通하여 드디어 72年 7.4 共同 聲明會意에 이르렀다.



同台意에 따라 南北調節委員會가 樹成되었고 8月부터는 南北赤十字會談으로 南北對話가 본격화됨으로서의 韓半島에서의 긴장완화의 努力이 하나의 절정에 달하고 南北關係에 新紀元을 가져오게 되었다. 이러한 韓國의 70年代 統一政策은 北韓의 閉鎖的社會를 開放하여 自由化的 물결을 불어넣어 줌으로서 北韓에 潛在하고 있는 變動可能要素를 자극하여 北韓體制를 變質케 하자는 뜻을 지닌다. (註, 이를 理論적으로 뒷받침하는 것으로는 흔히 이해되는 機能主義理論이 있다)

그러나 南北對話를 거듭할 수록 對話는 더이상 진전되지 못하고 5천만 民族의 회의만을 자아내고 있을 뿐이었다.

따라서 南北對話를 繼續推進하기 爲한 보다 구체적인 대안과 국제 정치무대에서의 可能性을 찾아내지 않으면 안되었다.

73.6.23日 이른바 朴大統領의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은 實質적인 南北對話의 촉진책과 韓半島의 긴장완화 및 평화통일을 지향하는 國際정세속에서의 能動的 可能策을 모색키 위한 努力의 結實이라고 보겠다.

### 第 3 章 6.23 宣言의 解釋

#### 才 1 節 6.23 宣言의 背景

分斷 四半世紀 동안 韓國이 推進해온 종래의 獨逸정책과는 달리 새로운 次元의 統一政策으로서 6.23 平和統一-外交宣言이 지니고 있는 構造的 背景은 國際情勢次元에서 본 對外的 背景과 韓半島內的 情勢次元에서 본 對內的 背景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여기서 對外的 背景이란 韓國以外的 地域에서 發生하는 非統制變數로서 韓半島問題에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치는 國際情勢를 의미하며 對內的 背景이란 韓半島內部에서 發生하는 內的變數로서 韓國統一政策의 直接的變化를 誘導하는 韓半島 內部情勢를 말한다.

우선 韓半島 對外的 背景으로서

첫째로 美·中共間 긴장완화 (US-China detente) 를 들 수 있다.

才 2 次大戰以後 膨脹하던 共產主義勢力을 最大限으로 저지한다는 미국의 基本政策에 따라 中共封鎖政策 (Containment policy) 에 우선적으로 집중하던 미국의 亞細亞戰略은 Guam Doctrine 을 거쳐 大幅的으로 수정되었고 1970 年에 접어들어 획기적인 政策轉換으로 1972. 2 月 「닉슨」미국대통령이 中共에 방문함으로써 美·中共間 긴장완화 조처를 斷行하였다.

둘째로는 1972. 9 月에는 「다니카」일본수상이 또한 中共을 방문하여 中國과 日本의 敵對關係에 公式的으로 종지부를 찍고 外交關係를 수립함으로서 日·中共間 和解가 成立되었으며 (Japan-China

rapproachment)

그리고 미·일간 同盟關係의 再調整(US-Japan alliance) 및 共產圈의 「헤게모니」를 놓고 相互紛爭을 계속하고 있는 中·欸間競爭(Sino-China Rivary) 등 一聯의 움직임은 戰後韓國問題에 直接·間接으로 영향력을 行使해왔던 強大國들의 力学關係가 相互 견제와 均衡의 維持를 통한 競爭의 共存 내지는 協商이라는 狀況으로 變質되어가고 있음을 말해준다고 보겠다.

다시 말하면 미·일·중·소 4大強國은 韓半島問題가 어느 一方에 有利하게 解決되는 것을 決코 방관하지는 않을 것이며 상호 평평히 맞서는 利害關係의 對立속에서 韓半島의 現狀維持 내지는 긴장완화를 원하고 있다고 하겠다.

이와같은 強大國들의 態度가 對決보다는 協商으로서 緊張緩和 현 상유지를 추구하는 과정에 있어서 操作性은 多様하므로 이를 극복 내지는 저지하기 위한 새로운 代案이 必要했던 것이다.

이러한 韓半島의 外的變化에 수반하여 韓半島內部情勢 또한 70年代들어 획기적인 轉換을 가져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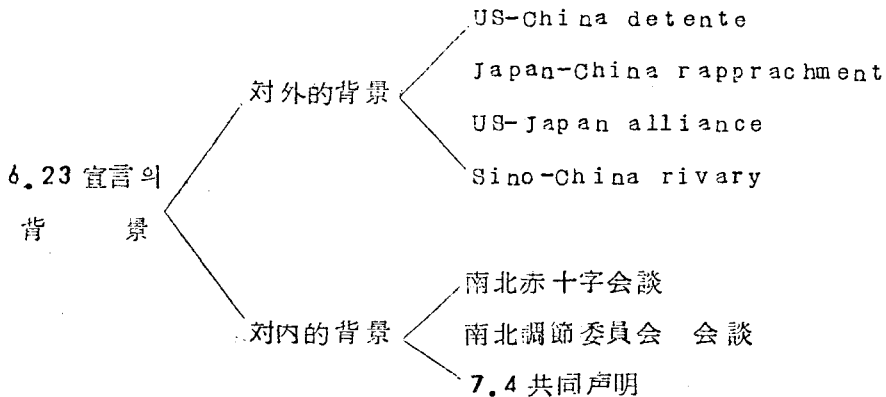
單一民族이면서도 南北韓 사이에 27년이상이나 평평해 있었던 敵對關係를 緩和시켜 70年代에 들어서 민족동질성을 바탕으로한 南北對話를 開催하였고 72년에는 7.4 共同聲明에 合議하기에 이르렀다.

7.4 共同聲明은 分斷四半世紀에 있어서 分斷의 歷史的事實을 받아들이고 그 위에서 交流를 通해 統一의 念願을 部分的으로나마 實現시킴으로서 分斷固着化를 防止하자는 統一의 原則과 새로운 次元에서의 南北韓關係를 규성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7.4 共同声明에서 南北韓 사이에 民族統一原則에 合意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南北對話는 좀처럼 진전되지 못하고 全國民의 회의만 더하여 왔다.

이에 北韓의 반성을 촉구하고 보다 설득력 있는 새로운 우리 측 立場을 밝히는 어떤 代案이 對內的으로 要請되었던 것이다.

以上에서 韓半島 對外的 背景으로서 4大強國間 緊張緩和趨勢傾向과 對內的 背景으로서 民族同質性 回復이라는 民族史的 當爲性을 實現시키는 새로운 양상의 統一政策으로서 6.23 平和統一 外交宣言을 發表하기 에 이르렀다고 보겠다.



## 才 2 節 六·二三宣言의 解釈

1. 六·二三宣言은 祖國統一의 目標을 國際政治過程에서 展開되는 平和共存秩序와의 調和속에서 追求하고자 하는 巨觀的 統一政策이다.

韓半島의 統一問題는 南北韓同의 國內問題인 同時에 周邊強大國의 制約을 받는다는 二重構造的 性格을 지니고 있기때문에 視國

際型 乃至 內爭型 分斷國에 比하여 더욱 어려운 問題를 지니고 있다.

勿論 國際型 分斷國家와 內爭型 分斷國家의 區分은 相對的 概念 이긴 하나 分斷에 國際的인 要素와 內爭的인 要素의 어느쪽이 보다 더 作用했고 影響했느냐는 것을 가려서 區分해 볼때 獨逸과 韓國은 國際型, 中國과 베트남은 內爭型으로 對比시킬 수 있을 것이다. (註: 東西獨과 南北韓, 東亞日報社, 1973, pp.15-16)

(그러나 同一한 國際型 分斷國이면서도 獨逸에 比하여 韓國의 경우는 內爭的인 要素도 함께 作用한 半國際型的 性格을 지니고 있는 점에서 獨逸의 統一方式과는 다른 接近方案이 要求되고 있는 것이며 바로 여기에 統一問題에 대한 어려움이 他分斷國에 比해 큰 理由라고 보겠다.)

이와 같은 國際型的 性格을 지닌 分斷된 韓國의 統一問題는 南北 關係에서 展開되는 國內政治次元과 國際政治過程에서 展開되는 國際政治的次元을 同時에 解決해야 하며 바로 여기에 韓半島 統一問題의 立體的性格이 가로놓여있다 할 것이다.

따라서 韓國統一問題의 性格은 國內的次元에서 南北間의 關係를 單一民族으로서 主體意識을 標榜하는 民族史的 側面과 自由·共產間의 兩理念의 對立關係로서 世界史的 側面에서 考察할 수 있으며 거기에 國際的次元에서 展開되는 國際政治秩序와의 複函數關係로서 파악할 수 있다.

韓國의 統一目標을 U (Unification), 南韓內部情勢를 K.C (Korean internal Conditions), 北韓內部情勢를 N.C (North Kore-

an internal Conditions). 國際情勢를 I.C (International Conditions) 라 하면 다음과 같은 公式을 導出할 수 있을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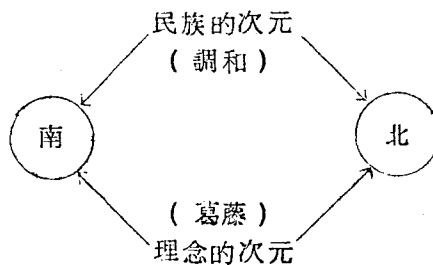
$$\ast \quad U = f(KC, NC) + IC$$

이와 같은 韓國統一問題의 立体的性格을 理論的으로 分析 糾明하기 爲하여 南北關係를 먼저 說明한다.

于先 南北關係의 二重構造의性格은 單一民族으로서 南北間의 關係와 相異한 理念的次元으로서의 南北關係로서 把握할 수 있다.

民族이라는 側面에서 南北關係를 把握할 때 相互調和의 側面에서 南北關係를 肯定的으로 유도할 수 있는 根拠로 볼 수 있는 反面 理念次元에서의 南北關係는 相互葛藤의 側面을 지니고 있으며 同時에 南北關係를 否定的으로 誘導할 수 있는 根拠가 된다.

이와 같은 關係를 圖式化하면



(註: 여기서 民族次元의 內容으로서는 民族主体意識, 單一民族, 文化共同体意識 同一言語等を 뜻하며 理念次元이란 自由-共產의 相異한 理念体制에서 비롯하는 異質的價值構造를 뜻한다.

화살표(→)은 南北關係의 相互接觸의 흐름을 動態的으로 表示한 記號다.)

強大國이나 國際潮流를 통하여 主體的이며 自主的으로 이루어야 한다는 現實的的可能案을 모색하기 위한 統一問題의 性格을 올바르게 理解하여야만 한다.

다시 말하면 客觀的狀況이 變하면 問題自体의 性格도 새로운 次元에서 規定할것과 解決方案도 다른 approach를 要望하게 되는 것은 當然한 일이다.

6.23宣言은 이와같은 客觀的 現實的 國際情勢를 올바르게 判斷하고 그것을 韓半島에 定着시킨 統一問題의 韓國化로의 轉移政策이라는 점은 實言을 不妄하리라고 본다.

3. 세계로 6.23宣言은 閉鎖性과 冷戰式 思考로 一貫하는 北韓에 對하여 國際社會속에서의 共存으로 自由化의 추격을 加함으로써 平和統一의 基盤을 造成하는 迂廻統一政策이다.

一般的으로 國際政治上 各國家는 그自身의 見解에는 될수있는限 적은 變化만을 받아들이면서 相對方國家의 見解에는 可能한限 많은 變化를 誘發시키도록 이 過程을 움직이는데 關心을 두고 行動한다.

따라서 各國家는 그自身에 對해서는 될 수 있는限 적은 變化를 받아들이면서 그 敵對國이나 相對國에 對해서는 많은 變化를 일으키려 한다.

특히 敵對國間에 벌어지고 있는 權力과 競爭에 關한 理論은 "Zero Sum" 概念의 冷戰思考(Coldwar thinking)로서 理解할 수 있다. 相對方에 有益하거나 或은 받아들여질만한 것이면 무엇이든 自國에는 分明 나쁜것이 틀림없다.

따라서 相互 緊張緩和나 相互和解 或은 타협을 향한 措置는 어떤 것이든 탐욕스런 敵國에 有益한 宥和政策일뿐이며 또 어느 한

國家自身の 利益에 對한 背信的인 犧牲이 따를 뿐이다. (註：具永  
永錄訳，國際政治分析，pp. 223~224.)

그러므로 好戰과 冷戰思考가 複合하여 文記하는 北韓에 對하여는  
直接的이고 強力한 어떤 手段보다도 間接적 迂迴政策으로 轉換함이  
더욱 効果的이다.

여기서 間接的 迂迴政策이란 國際政治次元에서 特定한 機能的機構  
또는 一般目的機構에 共通的인 課業을 위임하거나 共同參與하면서  
直接對立을 迴避하여 궁극적 統一目標을 達成하고자 하는 方案을  
의미한다.

오늘날 國際政治秩序는 脫冷戰論理와 脫「이데오르기」의 樣相을  
 띄우면서 永遠한 敵도 永遠한 同盟도 볼 수 없는것이 現實이다.  
 이와같은 國際社會에서 北韓과의 間接的 接觸을 誘導하므로써 그들  
의 閉鎖體制에 自由化의 충격을 가하므로써 平和統一의 基盤을 造  
成한다면 直接的이고 強制的인 어떤 方法보다 더많은 效果를 期待  
할 수 있는 것이다.

即 閉鎖體制下에서 冷戰的 思考方式으로 일관하는 北韓에 對하여  
國際社會의 干涉이나 壓力을 加함으로서 韓半島에 平和를 定着시키  
고 平和統一을 향한 指向코자 하는 間接的 效果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一般的으로 國際社會의 壓力이나 介入은, 이것 이외의 方  
法으로는 하지 못할 어떤것을 標的國家의 政府로 하여금 하도록 하  
거나 혹은 壓力이나 干涉이 없으면 標的國家의 政府가 하게 될 어  
떤것을 標的國家의 정부로 하여금 못하게 할 수 있다.

(註：具永錄訳，前掲書，pp. 237-238.)

6.23 宣言에서 南·北韓 共히 「UN加入」하고 「國際機構에 參  
與」할것을 제의한 것은 바로 이러한 理由라고 생각된다.



이와 같은 南北關係의 動態的 Model을 통하여 나타난 調和와 갈등간의 相互關係는 同一하거나 어느 한편이 크던가 작던가의 3가지 pattern을 想定할 수 있다.

調和를 H (Harmony) 갈등을 C (Conflict) 라고 하면

$H > C$  .....平和統一志向型

$H < C$  .....相互葛藤對立型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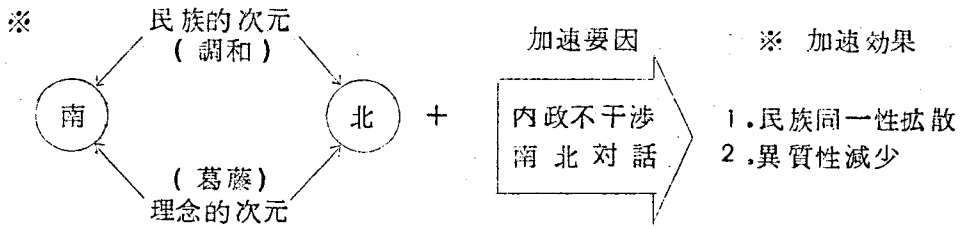
$H = C$  .....現狀維持型

따라서 統一을 追求하는 平和統一志向型은 民族次元으로부터 理念次元으로 向하는 調和의 過程을 加速化(acceleration)시키고 그와는 逆方向으로 向하는 갈등과정을 지연 혹은 減速化(deceleration)시키는 統一志向類型을 意味한다.

前者의 結果에서 얻어진 効果を 加速効果 後者の 結果에서 얻어진 効果を 遲延効果라 하면 加速效果가 遲延效果보다 우월할 수 있는 變因을(factor) 調節하므로써 統一志向型을 만족시킬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이 平和統一志向型을 滿足시키기 爲해서는 南北韓 相異한 理念體制를 主張함이 없이 民族次元에서 同質性을 회복하는 途程밖에는 없는 것이다. 왜냐하면 南北韓 雙方이 固守하고 있는 理念的對決이한 갈등을 誘發시킬 뿐이며 이의 程度가 甚할수록 갈등은 漸高될 것이기 때문이다.

6.23 宣言 제(2)항과 제(3)항은 바로 이러한 理論的 基底에 根拠하고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平和統一을 指向하는 国内政治次元에서의 南北關係를 動態的側面에서 調和와 갈등의 두 pattern을 導出하였으며 調和 pattern에 있어서 加速化要因을 通하여 民族同質性的 共感域을 拡散하고 異質性을 減少시키는 過程을 알아보았다.

韓半島統一問題는 国内的次元외에도 國際的次元에서 解決되어야 할 立体的性格을 지닌다 함은 앞서 지적한바와 같다.

다음으로 國際政治秩序를 살피고자 한다.

大体로 오늘날 國際政治의 現象은 두개의 相互 모순된 要素에 依하여 支配되고 있다. 即 自己의 國家利益追求와 世界平和라는 人類共通의 崇高한 理想때문에 國家主義가 항상 相互作用하고 있다. 따라서 自己國家의 利益과 타산이라는 面과 國際平和의 維持, 人類共同의 번영이라는 面이 모순되게 나타나고 國際政治는 戰爭과 平和, 힘과 正義, 國家本位의 權力政治와 國際協助主義라는 兩面性을 지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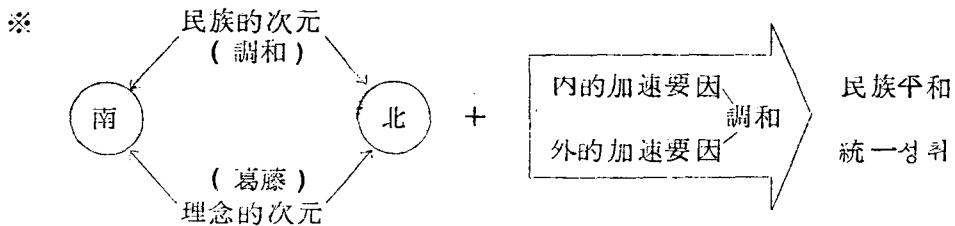
이러한 國際政治의 兩面性은 分断國의 統一問題에 있어서 分断이라는 現狀維持를 통한 平和共存이라는 名分으로 合理化되기 쉽다.

특히 60年代의 東西對決때와는 달리 韓半島 周邊國인 美·中·蘇·日 四強의 새로운 均衡體制가 必然적으로 韓半島 分断의 現狀認

定을 前提로 하고 있음은 分명한것 같다. (註：東西獨과 南北韓, 東亞日報社, 1973, P.45.)

따라서 韓半島의 統一目標을 追求함에는 如何히 周邊國들의 利害關係와 調和를 시키느냐의 問題가 提起되는 것이다. (關聯國際機構도 包含)

이러한 問題는 앞서 論한 祖國의 平和統一指向型을 만족시키는 內的要因을 外的要因과 如何히 調和시켜 나갈것이냐의 問題와 通한다.



外的加速要因으로서는 積極 外交展開와 國際平和機構加入 등이 있다.

6.23 宣言의 南北韓同時 UN 加入이나 國際機構에 同時參與를 期한 것은 바로 이러한 平和統一의 外的要因으로서의 加速的効果를 期하고자 하는의 意義가 있다고 보겠다.

이상에서 본바와같이 6.23 宣言은 韓半島 統一問題를 解決함에 內·外的要因을 同時에 考慮한 巨視的 統一政策이 라는데서 次元 높은 統一戰略의 表明이라 볼 수 있다.

2. 둘째로 6.23 宣言은 從來의 統一問題에 對한 國際化를 內部指向化한 韓國化 統一方案이다.

(註： 여기서 韓國化란 國內政治展開過程에서 周辺國家의 利害關係와 完全分離하여 分斷解決의 主体化로서의 韓半島를 統一한다는 概念이 아니고 統一問題에 대한 意識次元에서의 主觀的인 意識化를 意味함 )

過去 韓國統一問題에 對한 意識은 客觀的事實과 主觀的意識間에 相當한 간극이 있었다. 따라서 統一政策 大部分은 非現實的이며 實現性이 희박한 名分政策에 不過했던 것이다.

이와같은 統一政策이란 아무리 理論的妥當性을 지녔다 할지라도 實現可能性(feasibility)이 없는 政策으로 한갓 휴지조각에 不過할 뿐이다.

韓半島의 統一問題에 關한한 理論的으로 「옳은 解答이 무엇인가」 보다 現實的으로 옳은 問題가 무엇인가를 探求하지 않으면 안된다. 왜냐하면 아무리 解答이 옳다 하더라도 問題自体가 잘못된 것이 라면 그 解答은 無用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問題自体의 根源을 檢討하고 問題의 所在가 올바르게 把握되고 있는가 또 그 解決에 必要한 諸般要素가 모두 考慮되고 있는가를 새로이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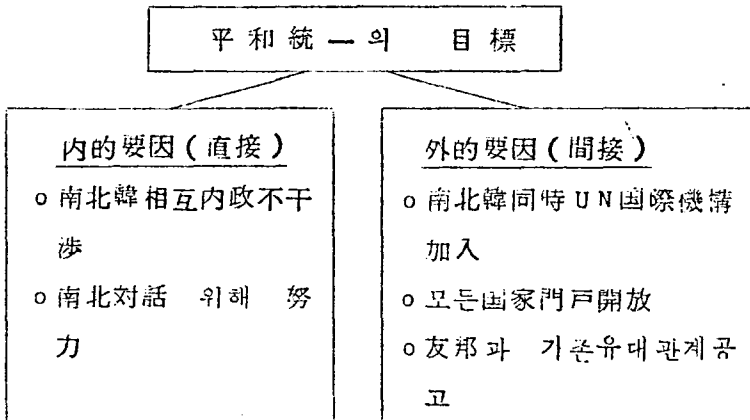
이러한 의미에서 韓半島의 統一問題가 國際的인 性格을 否認할 수는 없으나 그러한 國際化的 性格은 分斷當時의 狀況에서 비롯한 것이 아니라 그것과는 直接的인 關係가 없는 새로운 局面의 狀況과 現實에서 判斷되고 決定될 問題意識에서 비롯해야만 하는 것이다.

要件에 韓半島의 統一은 強大國이나 國際潮流에 依해서가 아니라

### 第3節 6.23 宣言의 內容과 問題點

前節에서는 6.23 宣言이 내포한 포괄적인 解釋을 하였으며 여기서는 各項目別로 理論的 現實的 內容純明과 問題點을 提示하고자 한다.

6.23 宣言의 全般的인 體系는 제①항에서 平和統一의 大原則을 천명하고 그 原則밑에 제(2)항부터 ⑦항까지의 6個의 戰略을 提示한 것으로 理解된다.



同宣言 제②항부터 ⑦항에 이르기까지의 各種 內容은 現實的으로 南北間의 分斷이라는 論理的 解釋이 可能할 수도 있으나 同宣言의 大原則인 선언제①항의 平和統一이라는 目標達成을 爲한 手段이오 方案이라는 平和統一戰略으로서 解釋해야만 할 것이다. 이와 같은 모순된 解釋은 平和統一이라는 理想과 分斷이라는 國內外的 現實의 Gap에서 비롯하는 것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와같은 Gap을 如何히 除去해야 하느냐는 問題는 同宣言의 各各의 內容解釋에 制限的 意味를 부여한다고 보겠다.

또한 6.23 宣言의 解釋에서 分析한 바와 같이 同宣言이 巨視的이고 迂迴的이며 韓國化한 統一政策으로서의 意味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同宣言의 各部分別 內容은 이와같은 解狀의 범위내에서 理解되어야 한다.

이상의 몇가지 점에 注意하면서 (考慮) 다음과 같은 題目아래 各各의 內容과 理論的 現實的 問題點을 分析코자 한다.

- (1) 平和統一原則
- (2) 內政不干涉 不可侵
- (3) 南北對話의 継続
- (4) 南北韓同時 UN 및 國際機構加入
- (5) 모든 나라에 門戶開放
- (6) 友邦과의 紐帶問題

## 1. 平和統一原則

6.23 宣言에 나타난 大原則은 統一主義이다. 同宣言 第①項에서 「民族의 至上課業인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成就하기 爲한 모든 努力을 傾注한다」고 統一主義를 明白히 하고 있으며 宣言 第⑤項에서 「統一에 障礙가 되지 않는 前提下에서 北韓과 함께 UN에 加入하는 것을 反對하지 않는다」고 했으며 北韓을 國家로 認定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도 分明히 밝히고 있다.

이와같은 統一主義는 獨逸의 分斷主義에 對한 概念과 若干의 比較說明코자 한다.

東西獨 基本條約을 보면 分斷主義의 原則에 따라 國際法上 効力을 지니는 獨逸民主共和國과 獨逸聯邦共和國를 完全分離시켜 놓고 있다.

基本條約에 나타난 領土問題를 보면 「雙方은 現在 雙方間에 存在하며 또 앞으로도 存続할 境界線の 不可侵性을 強調하고 各者의 領土存을 無制限으로 존중할 義務를 지닌다」(3條)고 規定하였으며 이의도 兩獨은 「國家權力이 各者의 領土內에서만 行使될 수 있다는 原則을 固守한다」(6條)고 分離主義을 規定하고 있다.

이러한 東西獨基本條約의 分離主義 原則에 反하여 南北共同聲明은 「祖國의 平和的 統一을 하루빨리 가져와야 한다는 共通된 念願을 안고」 「祖國統一을 促進시키기 위하여 完全 一致를 보았다」고 함으로써 南北韓間에는 統一主義에 對한 完全한 一致를 보았다.

이와같은 統一主義를 가지고 現實的 分離主義要因을 如何히 극복하는 問題는 韓半島分斷處理에 있어 가장 核心的인 問題가 아닐 수 없다.

선언제(2)항부터 제(7)항에 이르는 各各의 內容은 現實的으로는 分離主義的 要因으로서 南北分斷의 永久化를 招來할 可能性을 全히 排除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언제(1)항의 內容인 統一主義 原則을 分離主義와의 여하한 調和를 취할 것인가 그리고 그에 對한 理論的說明과 現實的 克服方案이 무엇인가의 問題點이 提起된다

## 2. 內政不干涉 不可侵

同宣言 第(2)項은 「南北間 相互 존중 및 武力行使禁止」를 宣言했던 7.4 共同聲明에서 한걸음 더나가 韓半島의 平和維持 및 이에 依한 統一意志의 基本條件을 좀더 具體化한 平和共存의 提示라고 보겠다.

内政不干涉 不可侵으로 表示된 平和共存이란 具體적으로 무엇을 뜻하며 共存秩序 속에서 統一의 意味는 무엇인가를 糾明코자 한다.

8.15 以後 60年代까지의 從來의 統一의 概念은 南北이 單一의 政府, 單一의 統治를 뜻했다. 따라서 그때까지의 統一問題란 어떤 方式으로 總選舉를 實施하며 如何히 政府를 構成하고 또 그러기 爲해 U N감시는 어떻게 할 것인가의 問題였다.

그러나 4半世紀 以上の 南北分断으로 因한 異質化와 不信 敵對 感情은 이러한 意味의 統一을 成統하기에는 너무도 深化되었으며 이같은 狀況에서 南北韓이 8.15 解放直後의 狀態로 復旧하기란 理論적으로나 實際적으로 不可能한 것이다.

이러한 歷史的 現實에서 나온 것이 平和共存이다. 궁극적으로는 종래와 같은 概念의 統一을 民族의 最終目標로 삼으면서 우선 現 狀態에서 民族의 單一性을 유지하기 위한 方案을 모색하자는 데에 平和共存의 意義가 있다.

7.4 共同聲明에서 南北韓은 合意에 따라 궁극적 統一을 이룩할 때까지 相互不信을 除去하고 긴장을 완화하여 군사적 충돌을 예방하고 經濟的 社會的 諸交流와 協力を 증진함으로써 平和統一의 基盤을 구축키로 했다.

따라서 南北은 統一이 이루어질 때까지 당분간 어떤 形態로든 서로 相對方을 認定하면서 一定期間동안 平和적으로 存在하지 않으면 안된다는 論理的 結論에 도달하지 않을 수 없다.

南北韓 共히 相互内政에 不干涉하고 侵略을 포기하는 것을 內容으로 한 平和共存의 現實的 形態는 相互 交流라고 하겠다.



이와같은 交流의 形式으로 展開되는 平和共存에는 몇가지 상황이 前提되고 있음을 注意해야 한다.

첫째로 南北韓의 分斷이 制度化되면서 南北韓의 政治理念과 社會體制는 그대로 存続된다.

둘째로 南北韓 共히 統一이 이루어질때까지 獨自的인 政治理念과 社會體制를 維持할 權利를 갖는다.

셋째로 雙方은 共히 政治理念과 制度의 差異를 그대로 認定하고 相互武力을 使用치 않고 他方을 非難하지 않아야 한다.

이와같은 前提는 곧 平和共存의 制度的 準備段階로서 平和共存의 基礎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基礎위에서 南北相互間 平和共存을 實現할 때 分斷의 固定化의 傾向을 如何히 克服하고 統一目標을 追求할 것인가의 새로운 問題가 제기되는 것이다. 다시말하면 南北統一을 爲하여 分斷을 制度化하고 相互交流를 통한 平和共存을 한다는 상호 모순을 如何히 극복할 것인가의 문제는 統一問題에 대한 새로운 次元임에 分明하다.

이와같은 問題는 어떻게 解決할 것이며 理論적으로나 現實적으로 平和共存은 可能하며 時間적으로 永遠히 지속될 수 있는 것인가의 몇가지는 다음 장에서 詳論코자 한다.

### 3. 南北對話

南北關係의 當面課題로 되어 있는 緊張 완화와 誤解와 不信의 解消, 나아가서 平和統一을 爲한 努力은 南北當事局의 對話가 中心이 되어야 可能한 것이다. 이것은 客觀的 現實이며 7.4 共同聲明의 合意이기도 하다.

그동안 남북적십자회담과 南北調節委員會의 會談을 數차례 進行하였으나 對話는 좀처럼 進전되지 못하고 相互異質性的 確認, 特히 共產主義와의 對話가 참으로 어렵다는 事實만을 알게 되었을 뿐이었다.

그러나 우리는 南北對話를 도저히 中斷할 수는 없다. 南北關係의 改善를 비롯한 基本問題의 解決이 없이는 平和의 南北統一은 不可能할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6.23 宣言 제③항은 南北對話의 具體的 成果를 爲하여 誠實과 忍耐로서 努力한다고 規定하였다.

理念과 體制가 相異하고 統一의 價值觀이 對立하고 있는 南北間에 있어서 相互理解的이고 協助的인 對話는 尙장엔 어려울 것이나 雙方이 다같이 단일민족으로서의 對話의 共同廣場을 찾아 그것을 넓혀나가는데 誠實과 忍耐로서 계속努力한다면 對話의 罅은 차츰 넓혀질 것이며 南北關係는 개선되어 나갈 것이라는 信念을 表現한 것이라 보겠다.

그동안 南北對話에서 얻은 經驗을 되살려 앞으로의 方向을 講究하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南北對話의 戰術的次元에서 2년동안의 實績을 再評價하고 우리의 態勢를 確立해야 할 것이다. 單純히 感情的으로만 對話의 교착상태에 對한 責任을 북한에 대해 歸屬하지 말고 論理的이고 体系的인 長短期 方案을 제시해야 할 단계라고 본다.

#### 4. 南北韓 同時 U N 및 國際機構加入

戰後 兩極化되었던 冷戰體制에서 世界는 漸次 多極化로 기울어지고 힘의 對決에서 對話를 통한 協商의 時代로 變化하였다. 이것은 國際的인 紛爭을 武力보다는 對話를 選擇함으로써 平和的解決이라는 所望스러운 方向으로 指向시키고자 하는 強大國의 配慮라고 보겠다.

이러한 對話가 國際機構를 통하여 論議되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하여 U N의 機能이 거의 無視되다시피한 오늘에도 U N을 둘러싼 숨가쁜 對話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韓國은 分斷以後 출판 韓國만이 韓半島에서 唯一한 合法政府임을 主張하고 韓國統一政策 또한 U N을 통한 南北韓 總選舉라는 것을 주장해왔는데 그와 같이 主張할 수 있었던 이면에는 U N이 韓國을 國際社會에서 탄생시키는데 産母役割을 하였으며 6.25사변 당시 U N軍을 韓國에 파견하였으며 언커크의 설치, 大韓民國의 合法性 正統性的 規定과 더불어 U N내에서 美國의 役割이 莫重한 時期에 U N과 韓國의 關係가 美國과의 關係처럼 近距離에서 理解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1960年代에 접어들어 多數의 新生國이 대거 U N에 加入했고, 南北韓 各己의 三角關係가 解氷됨과 同時에 美·蘇·日·中共等 強大國間의 勢力圖가 再編됨에 이르러 그러한 強大國關係의 從屬變數로서 南北關係는 必然的으로 U N關係에서도 새로운 關係가 造成될 수밖에 없었다.

(註: 金宅煥 南北韓 同時加入의 展望과 戰略 정경연구 73.10. P.94)

따라서 南北關係가 主核心이었던 對U N政策도 變化가 不可避하였으며

지난 四半世紀동안 對 U N 戰略에 根本的인 再檢討가 있어야만 했던 것이다.

또한 一部友邦을 包含한 強大國들이 南北韓의 分斷 同時加入을 願하고 있으며 北韓側이 이것을 共產主義을 通하여 積極 推進한다고 볼 때 이것을 저지시키는 韓國側은 고립되고 名分없는 또하나의 對決을 초래할 것이라는 展望에서 對 U N 政策의 變更은 不可避했다고 보겠다.

이와같은 現實的 要請으로 6.23 선건의 主核心을 이루는 제(4)항의 南北韓 同時 國際機構加入 제(5)항의 南北韓 同時 U N 加入을 提起한 것이라고 본다.

國際社會에서 南北平和共存이 可能한 이와같은 提議에 對해 北韓은 南北이 各各 U N 에 加入하는 것은 國土分斷을 영구화하는 것이며 統一을 願하지 않는 것이라면서 하나의 國家로 U N 에 加入해야 한다고 主張하고 있다.

勿論 南北이 統一되어 하나의 國家로 U N 에 加入하는 것은 바람직한 일이긴 하나 統一에 對한 南北間 對立된 立場은 短期間내에 풀릴 展望은 희박하며 따라서 統一은 民族의 念願임에도 그 實現은 長期的으로 展望치 않으면 안된다.

이러한 狀況에서는 統一될 때까지 U N 加入을 기다리는 것보다 南北이 同時에 U N 에 加入하는 것이 平和統一의 努力에 기여하는 것이라고 評價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우리는 南北韓의 U N 同時加入을 積極推進하여야 하며 우리의 對 U N 政策을 새로운 次元에서 再定立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같은 우리의 努力으로 南北韓 同時에 UN 및 國際機構에 加入한다 할지라도 그 自体가 決코 目的이 아니며 平和統一을 爲한 手段일진데 또한 UN 國際機構同時加入으로 國際社會속에 두개의 韓國이라는 認識을 如何히 없애며 分斷의 永久化的 傾向을 막을 것인가의 問題點이 提起된다. 넷가지 이상의 問題點은 後述한다.

## 5. 門戶開放

오늘날의 國際潮流는 既存했던 兩極體制에서의 敵對的인 國際關係를 平和的인 共存體制로 轉換시키고 있으며 이에 따라 外交行態는 차츰 平和的인 方法으로 問題를 解決하는 方向으로 展開되고 있다.

이러한 狀況下에서 우리는 從來의 外交政策이 追求하던 名分을 떨쳐 버리고 統一을 지향하는 새로운 外交政策을 수립하여야 할 地에 있다.

6. 23 宣言 제⑥항에서 「호혜평등의 原則下에서 모든 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할 것이며 同時에 門戶를 開放할 것을 促求」한 것은 바로 이러한 現實的 要請에 副應한 適切한 外交政策이라고 理解된다.

무릇 外交란 國際的인 政治環境에서 國家와 國際社會와의 關係를 매개하는 機能을 영위하는 것이며 一國이 對外的으로 交涉하는 通路라고 할 수 있다. 그것은 한편으로는 國際社會에서 오는 外的壓力을 받으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國家의 存立을 達成하여야 한다는 內的制約을 받고 있는 것이다.

(註: 趙在璠, 國際政治學 法文社 P. 147)

따라서 緊張완화라는 外的 壓力과 南北통일을 위한 平和共存의 內的

要請에서 볼 때 우리의 統一을 指向하는 外交政策이란 冷戰時代의 反共外交(소위 「할슈타인」 原則에 입각한 外交)에서 緊張緩和時代의 開放外交政策으로 轉換하지 않으면 안되었던 것이다.

그런데 平和統一을 達成하기 위한 目的으로 새로운 敵性國 또는 中立國에 對하여 門戶를 開放하여 外交關係가 具體化될 때 그들 相對國의 目標을 如何히 評價할 것이며 相互 어떠한 妥協點을 發見할 것인가? 그리고 外交의 手段은 무엇이어야 하느냐?의 具體的인 方案이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理念體制가 相異한 適性國家와의 諸般交流를 할 경우 야기될 것으로 예상되는 國民들의 갈등의 문제는 여하히 管理해 나갈 것인가도 重要한 問題인 것이다.

大體로 葛藤包容能力(Conflict tolerance) 및 葛藤管理能力(Conflict management ability)의 증가방안을 어떻게 具體化시킬 것이며 國民統合化 努力은 어떻게 할 것인가?

이와같은 몇가지 問題點을 統一政策의 轉換에 따른 全般的인 問題點과 아울러 다음 章에서 檢討하고자 한다.

## 6. 友邦과의 紐帶

우리의 統一外交政策의 目標가 兩極體制下에서의 脫皮를 爲한 政策轉換의 實利追求라는 現實的 目標을 向한다 하더라도 그간 國際社會를 爲해 追求하던 바 自由民主主義 體制의 形成을 爲한 根本的인 價值體系를 否定할 수는 없는 것이다. 自由民主主義의 體制를 維持키 위한 努力으로 오늘날까지 自由陣營과의 結束과

紐帶를 지녀왔던 가장 큰 이유이며 合理性이었던 것이다.

理念을 基礎으로한 兩極體制가 붕괴되었다 해서 또한 國際的인 潮流가 實利追求의 傾向을 띄운다 해서 우리가 從來의 自由陣營과의 紐帶를 弱화시켜야 할 理由는 없는 것이며 反面에 그들에게 심어졌던 우리의 좋은 이미지가 우리의 努力없이 變質되지 않고 維持되어 우리의 政策을 계속 뒷받침해 주리라는 觀念은 위험천만한 것이다.

따라서 종래 우리가 追求하던 바 自由民主主義 理念에 입각한 우리 政策의 계속성과 일관성은 실제 政策으로 表示되어져야 하는 것이다.

同宣言 제①항은 「友邦들과의 既存紐帶關係는 더욱 공고히 해나갈것」이라고 分明히 밝히고 있다.

따라서 우리는 自由友邦國들에의 우리와의 關係를 해치지 않고 또한 우리의 安全保障體制를 弱화시키지 않는 범위내에서 敵對關係에 있었던 共產黨과 또는 中立國과의 關係에서의 門戶를 開放하여야 하는 것이다.

더우기 우리가 敵性國이나 中立國과의 外交關係를 수립하기 爲해서는 現時點에서 友邦을 通함이 바람직하다는 것을 고려할 때 友邦外交는 그 重要性이 더욱 強調된다 하겠다.

그럼에도 不拘하고 여기에는 友邦外交라는 現狀維持的 要請과 現狀變遷이라는 對敵性國과의 外交를 如何히 조화시킬 것인가의 문제가 난점을 지니고 부각된다.

## 第 4 章 6.23 宣言의 推進方案

앞서 6.23 宣言의 內容을 分析한 結果 많은 問題點이 있음을 發見하였다. 6.23 宣言의 推進方案이란 이와 같은 問題點들을 如何히 극복하면서 同宣言을 具體化시킬 것인가의 諸方案을 의미한다. 于先 6.23 宣言에 內포된 問題點을 보면 다음 몇가지로 集約시킬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북한 平和共存問題로서 南北間 平和共存의 可能性을 구명하고 現實 妥當性을 지닌 남북한 平和共存形式과 分斷의 永久化를 防止하기 爲한 代案이 提示되어야 할 것이다.

두째, 南北韓 同時 UN 加入問題로서 南北韓 同時UN 加入에 대비하여 UN에 있어서의 韓國統一外交接近方向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세째, 敵性國에 對한 門戶開放政策으로서 對敵性 및 中立國 外交戰略과 開放政策으로 因한 國民의 갈등관리 (Conflict management) 등의 問題가 대두될 것이다.

네째, 南北對話의 問題로서 6.23 宣言으로 因한 南北對話의 意義와 그에 따른 推進方案이 提示되어야 할 것이다.

以上과 같은 몇가지 문제점을 中心으로 6.23 宣言의 推進方案도 첫째 平和共存政策 두째 對UN 政策, 세째 門戶開放政策, 네째 南北對話推進方向 등 4 가지로 区分하여 論議하고자 한다.

### 才 1 節 平和共存政策

#### 1. 平和共存의 概念



平和共存의 概念은 多様하다. 「아놀드 토인비」는 平和共存을 歴史哲學的으로 概念을 定立하였으며, 이와는 달리 政治的 意味로서 或은 外交政策의 基調로서 把握하는 見解가 있다. 그런데 平和共存의 意味가 現代的 意味에서 國際問題로 등장한 것은 1917年 「러시아」에 「볼셰비키」革命이 일어나 「소비에트」政權이 樹立됐을 때부터였다.

이때까지의 資本主義 對 共產主義 對立問題는 思想의 問題 理念의 問題에 지나지 않았으며 또한 國內政治의 問題이지, 國際政治問題는 아니었던 것이다.

이러한 두 理念의 對立問題는 世界最初로 「러시아」에서 共產主義 國家가 등장하면서부터 國際社會에 심각한 問題로 提議되어 平和共存의 問題로 發展한 것이다.

한편 1950年代 「후루시초프」 소련수상은 「레닌」과 「스타린」의 平和共存 理論을 對外政策과 革命戰略의 理念으로 發展시켰다. 「후루시초프」는 1956年 2月 蘇聯共產黨 第20次大會에서 「國際外交에 있어서 몇가지 原則的問題」라는 表題로 「平和的共存, 戰爭防止의 可能性, 資本主義로부터 社會主義로 가는 多様な 道」이라는 3가지 命題를 闡明하였다.

이것은 「후루시초프」가 1964년에 失脚했음에도 不拘하고, 오늘날까지 소련 共產黨의 對外政策 路線과 國際共產主義 運動의 戰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大體로 오늘날 平和共存 理論은 體制를 달리하는 社會主義 國家와 資本主義 國家間의 共存은 客觀的 實在인 만큼 戰爭에 依한

世界革命의 可能性이 없는 條件에서 兩體制間에는 共同滅亡의 根源인 戰爭을 피하고 領土保全과 主權의 相互 尊重 不侵略 內政不干涉 平等 및 互惠의 原則에 따라 平和적으로 共存해야 한다는 客觀的 當爲論的 概念으로 理解되고 있다.

이와 같은 意味의 平和共存은 時間적으로 永遠하고 理念的으로 完全한 和合을 可能하게 하는 것인가. 아니면 當분간 잠정적으로만 可能할 것인가. 이러한 實問은 相異한 兩 Ideology의 接近에 限界性이 있는냐의 問題로 代置할 수 있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相異한 兩 Ideology間에는 和合하여 하나로 收斂할 수 있는냐 아니면 相互 對立하면서 兩 理念은 離散할 것인가의 問題를 分析함으로써 說明이 可能할 것이다.

그런데 여기서 論議하고자 하는 平和共存은 羅半島內에서의 南北 羈間 平和共存 問題이기 때문에 理念的 要因外에도 南北 羈間 環境的 狀況的 要因을 同時에 分析하여야 할 것이다. 따라서 平和共存의 理念的 要因을 먼저 分析하고 이어 남북한 狀況的 要因을 考察하여 남북한 平和共存의 可能性을 評價하고자 한다.

## 2. 平和共存理念的 要因

理念的 側面에서 平和共存이 可能한가를 규명하기 전에 于先 Ideology의 概念을 간단히 더듬어 보기로 한다. Ideology란 매우 난잡한 概念으로 애매하고 때로는 그 機能이 여러 角度에서

惡用되기 때문에 한마니로 定義하기란 용이하지 않다. 그러나 一般  
的으로는 「이 데오르기」란 어떤 個人과 集團 또는 階層, 階級이  
社會와 自然에 對해서 품고있는 어느程度 體系化되고 一貫性있는  
觀念形態로서 定義되고 있다. (註 李克燦 政治學 1972.P181 )

이러한 意味의 「이 데오르기」는 그 機能으로 첫째 價值와 未來社會  
의 Utopia 像을 제시함으로써 技術集團과 階級間의 連帶感을 強化  
시키고, 둘째 構成員에게 使命感과 行動의 「에너지」를 부여하여  
共同社會를 組織化하는 機能을 가지며 셋째 心理的으로 保護性能을  
行한다. (註 金光雄, 「라과람바라」 독서신문 73. 9.2)

그런데 흔히 理念의 問題를 論하는 學者를 예들들어 Ceifford  
Geertz Andrew Haeker, L.H.Garstin, Raymmal Aron, Talcott  
Parsons, Edward Shils, Daniel Bell, Seymour Lipset, Karl  
Mannheim, Gosep Lapalombara, P.Sorokn 등 多數學者들은 理念이  
란 概念에서부터 異見을 가지고 있으며 따라서 分析의 角度를 달  
리하고, 또한 더 重뽐한 것은 그들의 分析 "를" 을 經驗의 世界에  
투영할때 左右가 하나의 國家에서 共存하는 日本, 伊太利, 「콜롬비  
아」, 「칠레」, 「놀웨이」 등지의 경우를 想定하고 있다는 事實이  
다.

이 論點은 우리의 南北韓 平和共存의 理念的 要因에 對하여 意  
疎깊은 示唆을 던져주는 것으로서 우리의 경우.

첫째, 하나의 政體속에서 共存하는 두 理念의 아니라는 것과  
둘째, 비록 文化가 다르고 政體도 다른 두 民族間의 理念을 論  
하여 그 接近可能性을 타진하는 경우에도 우리에게서 같은 言語를  
使用하면서도 다른 思考定向 때문에 보다 더 난이한 共存街道가  
놓인것이 아닌가 하는데에는 充分的 同感이 가는것 같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學者들간에 共通된 점은 Parsons 가 지적한  
것처럼 科學과 理念은 兩立할 수 없는 概念이라든지 理念은 하나  
의 從屬現象으로 그 浮沈은 環境的 要因 特히 經濟的인 것에 依  
해서 決定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貧富나 生活樣相의 격차가 커지면 理念의 問題가 고개를  
쳐칠고, 反面에 그 裕差가 줄어들면 理念의 問題가 고개를 숙인다.  
이와 같은 意味의 相異한 두 Ideology 가 果然 相合하여 하나  
가 될수 있을 것인가의 問題를 놓고 大體로 두개의 相反된 見解  
가 있다. (註, 金光雄 「라과람바라」 독서신문 73. 9. 2)

즉 民主主義와 共產主義가 서로 接近하여 收斂狀態가 可能하다는  
見解와 이와는 反對로 주로 階級社會에 있어서 富의 平等 즉 生  
產의 平等이나 分配의 平等을 이룩하기 힘들다는 立場에서 離散說  
을 主張한다. 收斂說을 主張하는 諸論者들은 資本主義나 共產主義  
가 人間의 참다운 生活를 保障하지 못한다고 생각하면서 人類歷史

의 終末을 避하기 위해 두 理念은 接近하여 하나의 統合社會 (Integral Society)를 이룩해야 할 것이며 또 그러리라고 믿는다. 그렇지만 이러한 理念이 그 規模가 宏大할 때 어느程度 實現 可能性이 있으며, 또한 그 存続度는 어느 程度인지에 대한 의문이 앞서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收斂說의 立場은 두 理念을 組織的 體系적으로 分析한 事實에 根據하는 것이 아니고 人類의 將來를 위해서 戰爭을 防止하기 위하여 主張하지 않으면 안되는 希望的 手段으로 理解해야 할 것이라는데 充分한 同意가 느껴진다. 고 하겠다.

이에 대해 濼談論者들은 우선 經濟的 側面에서 資本主義의 市場 經濟體制와 共產主義의 計劃經濟體制는 本質적으로 接近할 수 없을 뿐 아니라 心理的인 態度나 教育的인 側面에서 相異한 두 理念은 决코 收斂할 수 없다는 見解를 支持하고 있다.

또한데 오늘날 多數의 學者들은 人類의 將來 希望的인 手段으로 理解되는 收斂說에 많은 同意를 表하면서도 本質적으로는 濼談說에 對하여 많은 說得力 있는 見解가 顯著하며 따라서 平和共存이란 理念的 次元에서는 否定的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註 R.H.S.

Crossman, Reflections on the Cold War, Political Quarterly, Vol. XXII, No.1, p.15. 李 冠燦 政治學 1972. p.186)

### 3. 平和共存 状況의 要因

平和共存의 状況의 要因이란 單純한 理念的 次元을 떠나 韓半島 内部의 現實的 環境要因을 말한다. (여기서 韓半島 内部의 現實的 環境要因은 理念的 수용상태도 包含한다) 우선 북한의 共產主義를 보면, 比較的 「람스레닌주의」를 成功的으로 導入하여 北韓에 共產政權을 樹立한 金日成은 「스타린」 手法을 伝受하여 狡猾한 속칭작업으로 自身の 地位를 공고히 했으며, 더우기 国土分断이라는 環境的 條件은 政治 權力延長의 훌륭한 理論的 基盤이 되었던 것이다.

그러나 政治權力的 正当性이 결여된 金日成의 共產主義는 「람스레닌주의」와는 또 다른 獨創性을 主張하는 唯一 思想으로 변모했으며 「카리스마」적인 存在로 굳어졌다.

이와 같은 官制的 究 Ideology 의 지나친 경직성과 人爲的 作爲性은 차츰 國民의 活性化 手段으로 그 基盤이 와해될 可能性을 內包하고 있다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金日成 唯一 體系의 지나친 劃一的 思想教育은 자극에 둔감한 大衆을 창출시킬 可能性을 항상 지니고 있다. 그뿐 아니라 強制的 集團教育이 갖는 非自律的인 側面은 國民의 同意形成의 主體的 力量이 無視되어 既存 Ideology 體制를 와해시킬 수 있는 것이다.

특히 國際社會의 새로운 해빙조류는 외적충격을 加速化하여 前  
近代的 理念體系로서의 金日成 이상 숭배에 대한 극심한 도전을  
展望케 하고 있다. 北韓社會의 體制變動 要因은 「이데오르기」에  
局限하지 않고 Power elite, 經濟體制등, 北韓社會全般에 공하여  
바야흐로 變動可能性은 充滴되어 있다고 볼 수 있다. (註, 北韓  
社會變動 可能性과 自由化 方案에 關한 研究參照, 國土統一院 pp.  
108 ~ 130)

이와 같은 北韓社會 全般에 걸친 變動可能 要因은 北韓社會의  
自由化 方案에 의한 平和統一의 過度的 形態로서 南北韓 平和共存  
에 대하여 肯定的 見解를 取할 수 있게 된다.

또한 南北韓 共히 同一民族이라는 二次元에서 볼때 北韓社會에  
있어서 共產主義 理念의 深度는 決코 淺지않을 것이라는 측면에서  
남북한 平和共存에 대한 낙관적 見解에 充分한 동감이 간다. 남  
북이 分斷된지 4半世紀의 期間은 共產主義 Ideology가 北韓住民  
의 性格構造의 깊은 內面에 까지 침식하는데 充分한 時間은 아  
니며 따라서 共產主義가 要求하는 性格도 아직은 北韓住民의 Per-  
sonalty 의 表層 構造에 定着하고 있을뿐이고 內面의 構造는 在米  
的 性格을 지니고 있다고 생각된다. 따라서 Ideology 의 가식  
을 벗고 政治的 統制力을 의식하지 않는 狀況에서의 北韓住民은  
南韓住民과 差가 없다. (註 高 永復, 南北韓住民의 社會的 性

格 社会心理学, 法文社, 1973, p.97)

이와 같이 同一한 民族意識과 歷史的 共感域을 共有하고 있다는 狀況的 要因은 南北韓 平和共存의 肯定的 要因으로서 相異한 體制間의 収斂可能性을 加速化시킬 수 있다고 할 것이다. 바로 여기에 韓半島 特有의 狀況的 要因이 存在한다고 보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最近 北韓은 1950年代의 歷韓의 平和共存論을 公式적으로 支持하고 韓半島 統一問題에 주는 肯定的 의의를 強調하던 과거와는 달리 새로운 角度에서 平和共存論을 展開시키고 있다. 즉 1965年 金日成은 「相異한 社会制度를 가진 國家와의 平和的 共存政策은 社会主義 國家對外政策의 한 側面에 不過하다. 決코 그러한 政策에 依해서 反帝鬪爭을 溶解시킨다면가, 또는 그에 依해서 反帝鬪爭을 弱化시켜서는 안된다」고 主張하고 있다.

이와 같이 平和共存政策을 革命鬪爭에 從屬시킨 金日成은 그것도 어디까지나 外國과의 關係에서 단 認定할뿐 韓國과의 關係는 外國이 아니므로 平和共存政策을 適用할 수 없다는 理論을 表面上 내세우고 있는 것이다. 이것은 分明 남북한 平和共存에 대한 否定的 要因으로 考慮된다고 보겠다.

#### 4. 南北韓 平和共存 可能性- 評價

平和共存에 대한 理念的 要因과 狀況的 要因을 分析한 이상의



논의에서 南北韓間 平和共存 可能性에 대한 肯定的인 面과 否定的인 面이 있음을 檢討하였다. 南北韓 平和共存에 대한 否定的인 面으로서의 相異한 二 理念間에는 和合하지 못하고 離散할 것이라는 理念的 要因을 비롯하여 北韓側이 平和共存政策을 革命戰略으로 利用하고 있다는 狀況의 要因을 들수 있으며 肯定的 側面으로서는 收斂說의 理念的 要因과 同一民族으로서의 共成域 그리고 北韓社會의 變質可能性 등 狀況의 要因을 들수 있다.

이와 같이 南北韓 平和共存問題에 대하여는 相反된 見解가 있을 수 있다고 보겠다.

그러나 國際政治의 大勢인 平和共存 論理는 당분간 피할 수 없는 現實인것 같으며, 北韓側도 表面上 名分上으로는 南北間 平和共存을 배척하면서도 現在 I.P.U, W.H.O 등 韓國이 加入한 國際機構에 加入한 점으로 보아 現實적으로는 平和共存을 잠정적으로나마 追求하고 있다고 判斷된다.

國際的 現實이 平和共存 論理로서 支配되고 北韓側 또한 이같은 論理를 現實적으로 받아들이는 限 韓半島에서의 平和共存은 不可避하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韓半島에서의 남북간 平和共存이 永遠히 지속되리라고는 期待할 수 없으며 또한 期待해서도 안된다.

왜냐하면 平和共存이란 앞서 지적한 것처럼 不合理的인 合意로서 短期的인 暫定的 生存方式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결코 永遠할수는 없는 것이며 永遠한 平和共存이란 民族의 永遠한 分斷을 意味하기 때문에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南北間 平和共存政策은 平和統一 志向體系內에서만 意味를

주어 받는다고 理解하여야 한다. (註. 6.23 解釈 調和 갈등 平和 統一志向型 參照)

이러한 意味의 南北間 平和共存을 保障키 爲해서는 平和共存政策은 制度化되고 그 制度化된 裝置(tool)를 通하여 民族의 同質性을 擴散시켜야 할 것이다.

### 5. 平和共存의 制度的 保障

南北間 平和共存을 確固히 保障키 爲하여는 一聯의 制度的 裝置(tool)가 必要하다. 平和共存을 保障하는 制度的 裝置로서는 大體로 國際法, 國際機構 聯邦制度등을 들수 있다. (註. 이 같은 3 가지를 提示한 것은 K. Deutsch 의 國際政治分析論에서 國際的 갈등의 위협을 減少시키는 道具로서 國際法 國際機構, 聯邦制度, 超 國家的統合등을 지적한데서 「힌트」를 얻었다) 이들 3 가지에 對한 각각의 의의와 現實妥當性을 檢討하고 現實妥當性 있는 것에 對하여 좀더 具體化하고자 한다.

#### 1) 國際法

國際法이 오늘날 本質적으로 共存國際法과 經濟的인 協同國際法으로 区分되고 이들 두 分野에 別徧의 展望과 原則이 適用되고 있다는 前提에서 볼때 調和되지 못한 國際關係의 擴大와 政治的 思想的 分裂로 因하여 그 普遍性이 크게 흔들리고 있다고 볼 수 있다. (註, W. Friedmann, the Changing Structure of International Law. 1964. p.297)

共同體內에서의 成員統轄法, 國家管理權의 限界와 免除 國際的 不

法에 대한 國家責任의 原則, 國際紛爭處理에 있어서의 武力使用의 制限등은 傳統國際法이 法的 評등에 의해서 共存하는 狀態를 規定한 것이라고 보겠다.

그러나 오늘날에 와서는 그 價値의 共通尺度에 따라 普遍性이 달라지고 國家利益이 強하게 作用할 경우에는 國際的 約束이 全히 無視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것은 이미 形成主義的 規程만으로는 따를 수 없을만큼 國際法的 次元이 多様하고 또 크게 個別化해 가고 있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생각된다.

이와 關聯하여 現今의 國際法은 平和的 共存을 受容하여 長期間 存続되어온 分斷國家群을 固定화된 現狀으로 維持하려는 경향이 깊다. 國際法은 이러한 政權들을 國際法上的 領域에까지 끌어들이 이를 相互間的 暴力行使나 或은 才三國家가 이들에게 行하는 暴力行使로부터 이들을 保護하려는 立場을 取하고 있는 것이다. (註 Hyong-Kon Han "Legal problems of the Korean War" 國際關係研究. 才4卷 才3. 4号, 73.10. p.66)

한편 蘇聯國際法學者 Tunkn 教授는 「國際法の 発達에 있어서 새로운 歷史는 平和共存의 原則을 意味한다」라고 主張하고, 나아가 現代 國際法은 「平和共存의 法」이라고 主唱하고 있다. (註 金達中 共存効果의 發生과 平和共存 政經研究 6 (73) p.57)

이와 같이 現代 國際政治展開의 國際法 樣相은 平和共存의 法秩序를 形成하고 있으며 이와 같은 現象은 必然的으로 韓半島에도 影響을 줄 것이라는 予想은 容易하게 할 수 있다고 본다.

따라서 南北關係의 國際法 水準의 平和共存을 內容으로 하는 政治。經濟。社會。文化等 諸分野에 貫한 國際法 關係를 長期的 眼

目에서 檢討하고 韓半島統一 秩序와의 調和를 期하는 統一志向 國際法體系를 追求해야 할 것이다. 그러나 南北韓間 國際法關係를 設定할 경우 두개의 韓國으로서 分斷 固定化를 招來하고 北韓을 國家로서 承認하는 結果를 가져옴으로써 民族統一이라는 궁극적 目標達成을 不可能하게 할 것이기때문에 두개의 韓國을 認定하는 것만은 避해야 한다는 法技術的 必要한 手段이 動員되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法的으로 北韓의 國際法人格(國家性)을 承認하는 結果를 招來하는 條約(暗示的 承認의 効果)은 두개의 韓國을 成立시키고 이렇기되면 相對的으로 大韓民國政府의 唯一合法性을 喪失하게 되고 統一의 可能을 거의 기대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따라서 6.23 宣言을 統一志向 類型으로 解決한 이상 6.23 宣言의 테두리 속에서의 北韓과의 條約은 全혀 考慮할 수 없는 것이다. 다만 長期的 眼目에서 6.23 發展策으로서 남북한간(條約) 國際法水準의 關係設定은 研究할만한 必要性이 있다고 할 것이다. (註, 그러나 南北韓關係를 直接的으로 條約水準에서 설정할수는 없다하더라도 國際法社會의 國際機構加入은 別個의 問題로서 다음에서 다루고자 한다.

따라서 여기서의 國際法이란 남북한간 直接締結되는 條約水準의 締結능을 의미하는 것으로 使用됨을 상기할 必要가 있다)

## 2) 聯邦制度

一國에 하나의 中央政府가 存在하여 이것이 對外的으로 國家全體를 代表하는 경우 單一國家(Unitary State)라고 말하고 이에 對하여 둘以上の 國家가 結合하여 하나의 政府를 가지고 國際關係에서 全面的 또는 部分的으로 一國으로서 行動하는 경우 이것을 複合國家(Composte State)라고 한다. (註 李 漢基 國際法講義

博英社, 1973, P120.)

그런데 一般的으로 複合國家形態를 聯邦國家(federatwn)와 國家聯合(Confederation)으로 分類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있다.

(註 李 漢基教授는 複合國家 同君聯合, 國家聯合, 聯合國家의 3種類로 区分하고 있다. 註 國際法 前掲書 p. 20)

聯邦國家는 多數國家의 統合에 依하여 形成된 聯邦組織의 國家로서 原則적으로 聯邦國家自體가 完全한 外交能力을 가진 主權國家이며 그 構成國(支分國)은 内部的으로 國家의 性格을 保有하면서 對外的으로는 國際法上的 主體性을 갖지않는 것이 보통이다. (예 美合衆國, 獨逸, 「스위스」) 이에 反하여 國家聯合은 둘 以上の 國家가 條約으로서 結合하여 어느 範圍의 外交的 機能을 共同으로 行使하는 國家結合이다. 聯合自體는 國家의 性格을 갖지않으며 條約의 限度內에서 制限된 外交能力을 가질 뿐이다. 同時에 構成國도 原則적으로 獨立性을 保有하나 그 外交能力의 一部를 聯合에 이양하고 있으므로 完全한 主權國家라고 볼수는 없다.

(예 1815-1868 獨逸聯合, 1815-48 「스위스」聯合 現統一아랍共和國)

이와 같은 意味의 聯邦國家와 國家聯合은 K.Deutsch 의 單一化된 安全共同体( Amalgamated Security Comunity )와 複合的 安全共同体(Pluralstic Security Comunity)의 概念과도 같다고 말할 수 있다. (註, K.Deutsch에 의하면 統合의 主要目標가 統合된 政治的 單位들간의 平和保存뿐 아니라 또한 一般目的을 위한 보다 큰 힘의 獲得이나 어떤 特定한 課題의 達成 또는 어떤 共通的인 役割同一性(role identity)의 獲得, 或은 이들 모든것들의 어떤 組合이라 한다면, 共同의 政府를 가진 所謂 單一化된 完全共同体가 適合하며, 統合의 主要目標가 單純히 平和의 保存이

라면 統合的인 安全共同體로 充分할 것이라고 主張하고 있다. 具永錄 訳 前掲書, pp.320-324)

그런데 國家聯合을 韓半島에 適用할 경우 韓半島안에 두개의 國家를 認定하는 結果가 되어 統一志向의 平和共存 制度로서는 現實的으로 不當하다. 따라서 두개의 國家를 認定치 않는다는 前提下에서의 平和共存으로서의 可能한 制度로서는 聯邦國家를 言수 있다. 그러나 다음으로 문제되는 것은 聯邦國家가 韓半島에 現實的 妥當性이 있는가를 檢討하지 않으면 안된다. 聯邦國家가 韓半島에서의 妥當性을 지녔는가를 檢討하기 위하여 聯邦國家의 成立要因을 살피고자 한다.

歴史的으로 聯邦國家가 成立된 背景과 要因을 살펴보면 當時의 内外環境과 諸條件에 따라 各已 相異하므로 一律的인 것은 아니다.

그러나 大體로 構成國들이 本質的으로 異質的 要因을 내포한 基礎 위에서 다음과 같은 統合的 要因을 發見할 때 비로소 聯邦形成이 可能하였다. (註. 宋 榮大 北韓聯邦制主張의 論理와 背景 p.5)

例컨대 多數民族이 共存할 경우 또는 歷史, 文化, 言語, 宗教上的 多數性을 保有하고 國土가 광활할 경우 支分國의 自治性을 要求하는 경우와 같은 제반 異質的 要因을 土臺로 해서 支分國間에 埋念的 同質性이 存在하고 긴장이 解消되며 民主指向的 政治文化 風土 造成이 可能할 때 즉 統合的 要因을 共有할 때 聯邦造成이 可能하다고 볼 수 있다.

이리하여 聯邦國家 結成後 聯邦과 支分國間의 國家的 任務의 配分方法은 大體로 外交 軍事, 宣戰 講和 對外貿易, 諸州間의 通商, 國稅, 郵便, 電信, 貨幣等 聯邦全域에 걸쳐 統一的으로 遂行해야 할 事項에 關해서는 聯邦의 尊屬的 統治事項으로 하고 그밖의 事項에 關해서는 支分國의 管轄事項으로 一任하는 것이 通例로 되어 있다.

이와 같은 成立要因에 비추어 韓半島에서의 現實的 妥當性을 檢討하면

- ① 남북은 單一民族으로서 歷史 文化의 同質性을 견지하고 있으며 聯邦制를 實施할만큼 國土가 넓지도 않고 特히 理念思想面에서 民主主義 對共產主義라고 하는 극단적인 對決 樣相을 보이고 있으며
- ② 休戰線을 중심으로 긴장이 상존하고 있는 狀況下에서 同一한 國家目標追求라는 것은 現實的으로 不可能한 것이다.
- ③ 北韓體制의 閉鎖的이고 硬直한 特性을 미루어 볼때 聯邦下에서 相互 協助體制를 維持하기 爲한 民主的 政治風土 造成을 北韓으로부터 期許할 수 없기 때문에 남북한 聯邦 成立은 全혀 不可能하다.
- ④ 北韓이 제의하고 있는 「高麗 聯邦共和國」의 저의를 볼때 (註. 정경 73.10. p.78) 不可能하다.

以上の 몇가지 點으로 보아 南北韓聯邦制 實施는 그 現實的 妥當性이 없으며 따라서 平和共存을 爲한 tool로서의 現實的 價值를 지니지 않고 있다고 보겠다.

### (3) 國際機構

南北韓間 同時에 國際機構에 加入함으로써 北韓과의 直接對立을 迴避하고 國際機構를 통한 接觸과 交流를 시도함으로써 南北韓 平和共存을 保障하고 나아가서는 窮極的 統一目標을 達成하고자 하는데 6.23 宣言의 意義를 찾을 수 있다는 점은 이미 지적한바 있다.

國際法水準에서의 南北韓間 直接 關係設定은 두개의 韓國을 승인하는 (인정) 結果가 되기 때문에 6.23 宣言의 解釋上 不可能하지만 國際機構의 南北韓 同時加入은 이와같은 法技術上的 困難性을 극복하고 同一한 程度의 效果를 期待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國際機構에의 同時加入도 國際적으로는 事實上 두개의 韓國을 認定하게 될 可能性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다.

그러나 大韓民國 스스로가 北韓과의 條約을 체결하는 境遇와는 本質적으로 다른 것이다.

임격히 말하면 多數國間 國際機構에 (條約) 新國이 加入할지라도 다른 加盟國이 이 新國의 默示의 承認한 效果를 발휘하는 것은 아니므로 南北韓 同時 國際機構에의 加入으로 大韓民國이 北韓을 國家로서 承認한 것은 아니며 國際機構加盟國 또한 北韓을 國家로 承認했다고 볼 수는 없는 것이다. (註 李漢基 國際法講義 p 102)

따라서 南北韓 同時 國際機構에의 加入은 現實적으로 南北韓 平和共存裝置로서 可能하며 또한 適切한 것이라 볼 수 있다.

以上 南北韓 平和共存을 制度的으로 保障하기 爲한 Tool 로써



國際法 聯邦制度, 國際機構等을 6.23 宣言의 解釋에서 나타난 平和 統一志向類型에 두리안에서 現實的 妥當性을 中心으로 檢討하여 왔다.

그러나 國際法과 聯邦制度는 現實的 妥當性을 결여하므로 南北韓 平和共存政策으로서 選擇하기에는 適合치 않으며 다만 國際機構는 現實的 妥當性은 勿論, 바람직한 것으로 判斷되었다.

그러면 國際機構를 通하여 如何히 平和共存을 確保할 수 있는지 具體的인 方案을 講究해야 할 것이다.

## 6. 南北韓 同時 國際機構加入展望과 戰略

### (1) 國際機構의 意義

國際機構란 現實의 國際法社會의 所産, 다시 말하면 主權國家의 合意에 基礎를 둔 國家間의 機能的 組織을 말한다. 國際機構의 機能遂行은 한 國家안으로서 不可能하거나 不充分하기 때문에 이것을 補充하기 爲해 構成國家의 主權을 認定하면서도 그것에 規律制限을 加하여 團體로서의 獨立的인 存在와 機能을 갖게 하는 것이다.

비록 그 機能이나 目的에 있어 性質 또는 廣狹의 差가 있을지라도 國際機構는 항상 基本條約에 依해 그 機能이 定해지고, 構成 國家의 主權은 그 機能 및 目的의 範圍內에서 規律制限받는 것이다. (註, 金 燦奎 國際機構論 博英社 1963 P. 16)

그러나 大部分의 境遇에 現在의 國際機構들은 政府들과 意思疏通하는 것 이상을 할수는 없는 처지이며 한 國家의 主權의 核心에 까지는 接近하지 못하고 充分한 制裁力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註, 具永祿 訳 前掲書. P 280)

다시 말하면 國際機構는 執行을 強制하고 違反行爲에 對한 制裁를

加할 수 있는 統一的인 司法機關이 결여되어 주어진 任務를 충실히 遂行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經驗的 事實은 國際機構背後에는 各構成國의 自制 (Self-restraint) 와, 洞察力의 行使를 통한 自体実行 (Self-enforcement) 으로 어느정도의 制裁效果를 기대할 수가 있었다. 뿐만아니라 世界輿論의 壓力, 國內輿論, 第3國에 의한 逆效果를 야기시킬지도 모른다는 사실 또한 國際機構의 機能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도록 制裁役割을 담당하여왔다.

오늘날 國際法을 共存國際法과 經濟的 協同國際法 등으로 区分하는 傾向에 따라 國際法의 所産인 國際機構 또한 共存 國際機構와 機能的 國際機構로 区分할 수 있을 것이다. (註, Friedmann. Op Cit. P 36)

共存國際機構로서는 오늘날 UN을 비롯한 集團安全保障機構等 主로 平和維持를 目的으로하는 一般的 國際機構를 들수있으며 機能的 國際機構는 經濟社會 文化等 非政治的 部門에 걸쳐 國際的 協力을 目的으로하는 萬國郵便聯合, 國際勞動機構, 世界保健機構 등을 들수있다.

그런데 오늘날 UN은 그 本質的 機能에 있어 完全히 마비당하거나 둔화되고 있으며 특히 韓國統一問題에 關한 限 周辺強大國의 利害關係때문에, 그리고 安保理常任理事國인 中共·蘇聯의 拒否權行使로 期待價值를 크게 喪失하고 있는 實情이다.

그러나 機能的 專門的 國際機構는 政治的 利害關係보다 非政治分野에서의 機能的役割을 遂行하므로 南北韓 同時加入은 勿論, 同一한 國際機構內에서의 機能的 接觸이 용이하다고 보겠다.

따라서 U N 등 一般 國際機構보다 機能的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 韓 平和共存 可能性이 더 크다고 볼 수 있으며, 우리民族의 統一 志向体制을 만족시키는 戰略的 價値를 機能的 國際機構안에서 追求 함이 이상적이라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여기서는 U N 對策에 對한 論議를 일단 뒤로 미루고 機能的 國際機構를 中心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 (2) 南北韓 國際機構加入實態

北韓은 現在 110 個의 一般國際機構에 加入하고 있고 U N 산하 國際機構에는 WHO, UNCTAD의 2 個 뿐이다. 北韓이 加入한 國際機構 가운데서 政治的인것은 國際民主女性同盟 世界職業司盟 世界 民主青年同盟, 世界平和理事會 等이며, 學術機構로서는 國際數學者同盟 國際로양학 協會 國際電氣工學委員會, 世界科學者聯盟等이고, 體育機構 로서는 國際올림픽위원회 國際아마 농구연맹, 國際「스키」聯盟, 國際 체조聯盟, 그밖에 國際赤十字社, 最近加入한 國際議員聯盟等이 있다.

이간운데, 政治的인 國際機構는 모두가 國際共產主義戰線 組織이 며 그 지휘부는 共產主義者들에 依해 統制와 調整을 받고있다.

한편 韓國은 現在 104 個의 一般國際機構에 加入하고 있고 U N 산 하 國際機構로는 F.A.A, JNESCO W, H.O 等이 있고, 政府間 國際機構로 는 I.P.F.C, I.R.D.C 等 25 個機構, 민간기구로는 ABC, AFLA 等이 있다.

그리고, 南北韓 同時加入한 一般國際機構로서는 現在 最近에 北韓 이 加入한 W.H.O. I.P.U 를 비롯하여 32 個機構에 달하고 있는 實情이다.

### (3) 南北韓 同時 國際機構加入 展望과 戰略

南北韓 同時 加入하는 國際機構의 數는 앞으로 繼續增加 추세를 보이고 있다. 北韓은 國際적으로 보다 많은 認定을 받기위하여, 그리고 北韓이 주장하는 聯邦制에 대한 對外的 有利한 條件을 造成하기 爲하여 國際機構 參與를 積極化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繼續 努力할것으로 보인다.

한편 韓國은 南北韓 同時 國際機構加入을 반대하지 아니한다 하였으므로 (6.23 宣言, 제4 항) 北韓의 國際機構加入을 저지코자 했던 종전의 態度를 벗어났음은 勿論, 北韓을 國際機構에 積極維持 함으로서 國際社會속에서 北韓과의 共存效果를 期待하는 方向으로 나갈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國際機構안에서 南北韓 共存은, 國際적으로 「두개의 韓國」을 定着시키는 結果를 招來할 것이기 때문에, 韓國으로서, 이에 對備하여 國際社會속에서의 南北韓 平和共存이 制度化되면서 同時에 점진적으로 平和統一을 追求하는 南北韓 國際機構 共存戰略이 강구되도록 해야할것이다.

다시말하면 南北韓 平和共存의 制度的 裝置 (tool)로서 國際機構에의 南北韓 同時 加入도 6.23 宣言의 解釋에서 제시된 平和統一 志向 體系內에서만 意味를 부여받는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따라 몇가지 戰略을 다음과 같이 제시할 수 있을것이다.

- ① 南北韓間에 기왕에 单独加入한 國際機構는 于先加入側이 韓半島代表性을 保有토록 하므로써 韓半島의 代表性分裂을 防止하고,
- ② 南北韓間에 복수가입된 機構에서는 民族同質性を 基本으로 相互共同利益을 모색하여, 國際機構에서의 共同戰線을 疎도록 하

고 南北韓 單獨加入을 爲한 統合戰略을 수립하고,

③ 國際機構內에서도 相互 적대행위를 禁止하도록 한다.

#### 7. 國際機構를 통한 平和共存效果.

國際機構를 통하여 南·北韓間 共存함으로서,

첫째, 南北韓間 相互긴장이 완화될 것이며 戰爭을 防止하고 나아가 單一共同체로 統合할 수 있는 希望을 가질 수 있다.

다시말하면, 閉鎖적이고 冷戰論리로 一貫하는 北韓에 對하여 國際機構를 통한 自由化의 충격을 불어넣어주고, 民族同質性을 回復하여 祖國統一을 達成할 수 있다. (註, 이에 대한 理論的 說明으로서 는 흔히 거론되는 機能主義의 國際機構를 통한 接觸으로서 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

둘째, 對外面에서 볼 때, 南北韓 平和共存制度로서 國際機構共同加入은 國際的 輿論의 支持를 크게받을 수 있을 것이며 따라서 外勢의 干涉없는 自主的 統一目標을 達成할 수 있을것이다.

그러나 國際機構를 통한 平和共存은, 이와같은 利点만 있는게 아니고, 運營여하에 따라서는 두개의 韓國을 國際적으로 固着化하는 結果를 가져올수도 있으므로, 이에 대한 對策을 적극적으로 강구해야 할 것이다.

또한, 國際機構를 통한 南北韓 共存은 南北韓 直接對話와 南北韓 平和交流를 前提로 可能한 것이다. 그러나 國際機構를 통한 共存은 對內的으로 南北關係에 波及效果를 가져올것이며, 따라서 南北對話나 交流에 對한 加速效果를 期待할 수 있다고 보겠다.

## 第2節 對UN政策

### 1. UN과 統韓問題의 性格

UN은 1947年 第2次 總會부터 現在에 이르기까지 거의 매년 韓國問題를 討議하여왔으며 統韓方案으로서 UN감시에 의한 韓國全地域에 걸친 總選舉로서 統一政府를 樹立하자는 總會의 決議를 거듭하여왔다.

한편 大韓民國은 1948. 8. 15 政府樹立以後 北韓地域만의 總選을 主張하여오다가 UN감시하의 南北韓總選을 實施한다는 UN決議에 充實하여왔다. (註, 從來의 統一政策參考)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까지 韓國이 統一되지 못하는 原因은 무엇인가, 그 理由를 다음 몇가지로 要約할 수 있을것이다.

첫째, UN總회의 權限에 關한 本質的인 問題에 한 理由가 있다고 볼 수 있다. (註, 朴鍾聲, UN을 통한 韓國의 統一方案, 國際法學會論叢 第八卷 第一號 PP 29~64)

UN總會는 國際的인 問題를 討議·考慮·研究·할 수 있으나 最終的인 權限의 性質로서는 勸告등의 權限밖에 없는 것이며 換言하면 總會의 權限은 法的拘束力을 가지지 않는다. 따라서 UN總會가 어떠한 內容의 決議를 채택하여도 그 權限行使는 勸告의 범주를 넘지 못하는 것이다.

UN의 實質的價值는 國際的 問題를 一定한 場所에서 共同으로 討議한다는 것, 以外에는 特別한 것은 期待할 수 없는 것이다.

둘째로, 強大國間의 利害關係 충돌이라는 要因에서 또하나의 理由

를 들 수 있을 것이다. 韓半島로 둘러싼 周辺強大國의 利害關係가 U N 안의 서의 韓國問題의 性格을 그대로 規定한다고 볼 수 있다. 왜냐하면 U N을 비롯한 國際機構는 強大國의 合意와 協力이 없이는 所期의 目的을 達成할 수 없기 때문이다.

세째로, 北韓의 對U N政策에서 또 하나의 심각한 理由를 발견할 수 있을 것이다. 北韓의 對U N政策은 첫째 U N은 韓國問題를 討議할 권한이 없다고 主張하며 둘째, 駐韓U N軍 撤収, 세째 Uncurk (國際聯合 韓國統一 復興委員會) 解体, 그리고 韓半島 問題에 對한 U N 討議 排除로서 이러한 北韓의 主張은 해마다 U N 總會에서 蘇聯을 비롯한 共產諸國 및 一部 亞·阿非同盟國의 共同決議案으로 提起돼왔다. 따라서 韓國問題를 U N에서부터 分離시키려는 것을 傳統的 對U N政策으로 삼아온 北韓이 U N 總會에서 韓國問題가 論議되는 境遇 無條件 參席하겠다는 主張도 實은 韓國統一問題의 論議에 參席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韓國問題에 U N이 一切 關与하지 말라는 要求를 관찰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보겠다.

(註, 北韓은 韓國問題의 U N 討議는 韓國問題의 性格이 民族內部의 問題이므로 다음 근거로서 不當하라고 主張하였다. 즉 U N 헌장 第7場 第2條 7項의 平和에 對한 위협 平和의 파괴 및 침략행위에 關한 行動에 基因하는 강제조치의 適用을 못하게 하는 것은 아니다)

더우기 近來에 U N의 內部構造에 變化가 일어났을뿐 아니라 強大國間의 勢力圖가 再編되므로서, U N에서의 韓國問題의 性格을 變

화시켰다. 첫째, 新生獨立國의 大舉 UN 加入으로 인한 UN의 構造的 變化를 들수있다. 아시아, 「아프리카」, 「라틴아메리카」等地的 新生獨立國이 大舉 UN에 加入함으로써 UN總회의 決定作成에 決定的 影響力을 行使하게 되었다. 勿論 UN總회의 機能이 권고등의 權限을 가질뿐 強制性을 띤 決定은 할 수 없다손치더라도 이를 新生獨立國의 團合的合作이 이루어질 境遇는 安保理에 對한 間接的 壓力을 加할 수 있으며, 強大國들의 政策決定에도 커다란 影響力을 기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라서 오늘날 國際政治의 重要한 問題는 UN 안에서 보다는 強大國間의 相互協商무대에서 일괄 처리되는 경향이 뚜렷이 나타나고 있다. 그리하여 이제 UN은 그 本質的 機能은 強大國으로 移轉되고, 부수적인 問題만을 다루는 弱體機構로 轉落되고 말았다.

두째 UN 内部에서의 強大國間 勢力再編을 들수있다. 지난날 UN의 主役을 담당하여왔던 美國의 役割은 오늘날에는 美國을 포함한 5대 상임이사국 各各에게 골고루 配分되었다.

이제 어느 상임이사국도 過去와 같이 同質的 次元에서의 意見의 合致는 事實上 어렵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와같은 一聯의 UN 情勢의 變化가 지난날 UN을 통한 韓國統一政策에 對한 的의를 상실시키고 있다는 것은 두말할것도 없다.

더구나 오늘날 UN의 普遍性原則에 따른 現實化 政策傾向은 UN에 對하여 韓半島 唯一合法性을 더이상 추구할 수 없게 되었고 追求의 意義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러한 點에서 南北韓 同時에 UN 加入을 굳이 반대할 아무런



실익이 없다고 보겠다.

## 2. UN의 分断問題處理類型과 韓半島處理 展望

UN에서의 韓半島 問題處理를 展望하고 對UN戰略을 樹立하기 爲해서는 몇 가지 類型으로 分断國加入形態를 分類하여 보는 것이 좋을 것이다. (註, 辛承權; UN의 分断國問題處理三類型 政경연구

73. 10. P. 73 : 東西獨과 兩北韓 前揭書 p. 446)

### 첫째, 中共加入 類型

1971. 9. 21부터 開催된바 있던 第26次 UN總會에서 1950年 以來 懸案問題로 되어있는 中國代表權 問題가 22년만에 매듭지어졌다. 즉 「알바니아」등 17箇國이 제출한 「UN에서의 中華人民共和國의 合法的 權利回復」이라는 決議案과 美國의 「中共을 UN에 加入시키고 國府를 殘留시키되 中共에게 安保理常任理事國 자리를 준다는 二重複合代議制와 國府축출」을 重要事項으로 지정하는 逆重要事項, 決議案이 對決하여 圧倒的 多數로 가결되어 마침내 中共은 UN에 발을 디게 되었다.

이로서 中共의 UN加入은 UN의 普遍性問題를 本格的으로 제기하게 만들었고 일련의 다른 分断國들에게도 國際社會에서의 現實化를 촉구하는契機가 되었다.

### 두째, 東西獨加入 類型

1949년 東西獨으로 分断된 이래 西獨은 西獨만이 唯一한 合法政府로 獨逸을 代表한다는 主張과 함께 「할슈타인」原則을 표방하였다. 이 原則은 實은 中立國家들이 東獨을 承認치 못하게 하는데 그 政治的 意圖가 있었던 것이었다.

「할슈타인」原則은 國際政治에서의 高아로 西獨이 墮落할 우려가 있다는 反對 輿論이 분분한 가운데 드디어 66년 12월 1일大聯政으로 수정이 加해지기 始作하였다. 63년의 「루마니아」와 國交체결. 69.9. 「브란트」수상의 大聯政은 결국 「할슈타인」原則의 公式的폐기를 宣言케했다.

「할슈타인」原則의 폐기는 東西獨 兩國의 UN 同時加入기운에 박차를 加했다. 그것은 西獨이 마음놓고 東歐諸國과의 國交를 타개할 수 있게 되었을 뿐 아니라 西方國家들이 東獨을 承認케하는 事實上 一民族 二國家 (One nation two State) 概念을 창출하는데 이바지 했다. (註, 東獨과 南北韓. 東亞日報社. pp 446~472)

70年代에 들어 西獨이 蘇聯과의 緊張緩和를 다지고 그 연장선 상에서 對東獨화해정책을 展開할 수 있었다는 점이 對UN 「어프로치」에 있어서의 東西獨型의 가장 두드러진 特徵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상황여건의 發展에 따라 73.9月 第28次 UN 總會에 東西獨 同時加入을 認定받고 表決結果 西獨은 當당한 UN 加入國이 되었다.

이러한 類型의 UN 分斷問題處理는 다른 分斷國에도 점차적으로 擴大適用될 可能性을 암시하고 있다는데 特徵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있다.

### 3. UN에서의 韓國問題 處理 展望

UN에서의 韓國問題處理類型은 中共加入類型이나 東西獨加入類型과 다른 類型을 만들것인가 아니면 兩類型中 어느하나와 同一한

類型을 만들것인가의 展望은 용이한 問題는 아니다. 왜냐면 分斷 國問題의 性格을 相互比較해보면 相當한 類似性을 지니고 있는 반면에 他 分斷國과는 다른 차이점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內爭型分斷國인 中共의 U N 加入類型보다는 國際型인 東西 獨의 加入類型이 韓半島의 處理에 適用될 可能性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일이다.

따라서 東西獨과의 同異性을 比較하므로서 韓國問題의 U N 處理 展望을 하고자한다. (註, 東西獨과 南北韓. 前掲書 p. 472 )

① 北韓은 東獨과는 달리 U N 同時加入申請을 그속셈과는 달리 形式論理上 (大義名分上) 제기하지 않고 있다.

② 南北韓 共히 韓半島問題處理에서 영향력을 갖고 있는 美·蘇, 中共等 強大國과 對角線的으로 對話의 Channel 을 갖지 못하고 있다는 事實이다. 즉 韓國은 西獨과는 달리 소련 및 中共과의 緊張緩和를 다치지 못하고 곧 바로 南北對話에 임했다. 北韓의 境遇도 마찬가지로 政略的인 對美 接近을 爲한 低次元의 「시그널」表明은 있었다고는 하나 美國 그리고 日本과의 政府 Level 에서의 始初的 對話「채널」로 폐쇄되어 있다.

③ 韓民族은 그 民族文化의 傳統과 오랜 歷史속에서 함양된 單一民族意識때문에 「民族二國家論」의 祭物은 될 수 없다는 窮極的念願이 뿌리박혀있다. 뿐만이 아니라 南北韓을 둘러싸고 있는 四強體制의 「패턴」이 基本的으로 東西獨을 위요한 「패턴」과 相異하다.

이와같은 몇가지 사실들은, 兩獨이 相互關係正常化를 이루어 두개의 獨逸로서 現實化政策을 取함으로서 U N 에 加入한 對 U N

Approach 와의 相異한 韓國의 對UN 接近의 特徵이라고 볼 수 있으며 따라서 兩獨UN加入類型과는 다른 차원의 새로운 類型을 예상케 한다고 보겠다. 그러나,

① 美蘇平和共存體制 (Pax Russo-Americana)의 具體化단계 그리고 美·中共間의 政治的 和解等이 대면하는 緊張緩和와 國際協力の 二次支柱에 임각한 平和共存의 國際政治力學의 論理에서 볼 때 北韓의 韓半島의 UN討議 및 南北韓 同時加入의 거부등은 오래 지속되지 못할 것이며,

② 今年 28次 UN總會에서의 東西獨 UN加入이 초래할 加速化 現象이 必然的으로 韓半島에 영향을 줄 것이며,

③ 昨今·北韓은 中共의 UN加入과 UN內의 普遍性 原則

(Universalsm)에 의한 UN의 構造變化에 便乘, UN이라

는 世界機構에 進出함으로서 國內의 地位를 向上시키고자 하는

底意에서, 對UN 政策에 積極성을 보이고 있다는 사실과 또

한 최근 北韓이 W.H.O I.P.U 등 國際機構에 (한국이 가입한)

가입하므로써 그들의 國際的 地位向上에 부심하고 있음을 考

慮해 볼 때, 이와같은 一聯의 事實들은 對外的 壓力에 依

한 北韓의 對UN政策 變化를 초래케 할 것이며, 따라서 南北

韓이 同時에 UN에 加入할 것이라는 展望을 부여주고 있다.

따라서 南北韓 同時UN加入에 대비하여 UN에 있어서의 韓國統 一接近方法을 다음과같이 강구해나가야 할 것이다.

#### 4. UN 에 있어서 韓國統一接近方向

##### (1) 두개의 韓國과 代案作成.

南北韓 同時 UN 에 加入이 實現될 境遇 「두개의 韓國」은 國際적으로 制度化될 것인바, 이에 대하여 統一民主 韓國政府樹立을 위한 戰略적인 強力성을 위해 거국적인 對內的 協同外交態勢와 國際的 協同態勢를 形成해서 代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우리의 國力培養과 民主力量 涵養時까지 暫定的인 對應態勢와 長期的인 統韓促求方案을 導出하면서 國際的 여건의 성숙과 國內的 與件을 造成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 (2) 美·中共·蘇·日本의 四極構造의 効果적인 利用

多極적인 國際勢力改編段階에서 韓半島에 直接的인 理解關係가 있는 美·中共·蘇·日本 等 4大強國에 効果적인 우리의 統韓促進勢力을 正確히 認識시키기 위해 個別的으로 第3國을 通해 우리나라의 國際平和主義的 接近과 自律的인 統一接近方向을 認識시켜야 할 것이다.

### (3) 對共產圈 外交強化

UN에 加入後에는 對共產圈 外交의 Root는 擴張될 것으로 豫상된다. 따라서 特히 北韓에 影響을 강하게 주고있는 蘇聯·中共에 對한 積極外交를 펴므로써 韓國에 對한 새로운 인식과 Image를 부각시켜야 할 것이다.

### (4) 韓半島 緊張緩和와 南北對話의 積極推進

韓國外交는 UN이 全部가 아니며 UN 同時加入이 韓國統一의 完成이 아니기 때문에 UN 外交次元과는 다른 韓半島 緊張緩和와 南北對話의 積極推進을 기도해야 할 것이다.

왜냐면, 韓半島의 平和維持와 平和統一이 우리의 眞正한 政策目標라면, 이를 解決할 수 있는 窮極的인 무대와 主人公은 UN이 아니고 韓半島이기 때문이다.

## 第3節 門戶開放政策

門戶開放 政策은 우리나라 外交政策의 한 一環으로 外交政策의 基本範圍를 벗어날 수는 없다. 따라서 門戶開放政策의 推進方案을 講究하기 前에 우리나라 外交政策의 基本方向을 確認하는 것이 必要할 것이다.

## 1. 韓國外交의 基本方向

### (1) 統一外交

韓半島에 있어서 南北統一이란 우리民族의 窮極的目標이며 民族的 至上課題이다. 따라서 韓國外交는 統一을 爲한 外交이며 統一에 關한 外交다. 韓半島의 分斷이 있은이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韓國은 統一을 爲한 殊기찬 努力을 經주하여왔으며 設사 南北韓 同時 UN에 加入할 境遇라도 南北統一이 成就되지 않는 한 統一外交는 繼續될 것이다.

### (2) 自主獨立外交

統一이 民族의 念願이라고 하면 韓國의 自主獨立을 保障한다는 것은 이나라의 最高至上命令이다. 主權과 領土의 保全은 國家와 民族의 生存權을 뜻하는 것이며, 이것은 그어느 國家目標보다 優先하는 것이다. 南北統一을 爲한 外交政策도 韓國이 生存한 바탕위에서 可能한 것이며 外交政策의 推進力도 韓國의 生存위에서만 發揮될 수 있는 것이다.

統一이란 現象타파, 現象변경을 의미한다면 自主, 獨立이란 現象保存을 뜻하는 것으로 相互 矛盾關係에 있다고 볼 수 있다.

이와같은 모순을 조화시키기 위하여 統一이라는 現象打破는 오늘의 狀況에서 平和的인 變更, 즉, 平和共存속에서의 統一追求를 意味할 수 밖에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 (3) 經濟 外交

主權獨立을 維持하는 것이 한 나라의 絶對的 國家目標라고 한다면 國家發展과 그 나라의 經濟的 번영을 위한 外交 또한 그에 못지않게 重要한 課業이라 하겠다. 따라서 經濟外交는 韓國의 번영과 發展을 기약하는 첩경이니 海外資本과 시장확보를 위한 全國民的 努力이 絶對히 必要되는 國家間 外交目標이다.

以上에서 본바와같이 韓國外交의 基本方向은 6.23 宣言에 나타난 開放外交의 推進에 있어서도 基本方向으로 제시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關聯하여 다른 측면에서 開放外交의 基本方向을 제시하면, 첫째, 開放外交는 自由友邦과의 유대關係를 헤치지않는 範圍內에서 推進해야 할 것이다. 6.23 宣言의 第 1項에서 명백히 한바와같이 自由友邦과의 유대를 繼續維持한다는 原則은 宣言 第 6項에서 제시된 모든 나라에 門戶開放한다는 外交政策의 調和를 가져오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이와같은 事實은 開放外交의 限界를 뜻하는 것이며 具體的으로는 韓國安保外交의 테두리를 벗어날 수 없음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두째, 開放外交는 호혜평등 원칙하에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만일 우리의 開放政策을 받아들이는 自由陣營 및 共產陣營이 韓半島에 形成되고 있는 勢力均衡을 파괴함으로써 戰爭의 위험을 야기시키는 일이 있다면 韓國의 自主獨立을 해치게 될것이기 때문이다.

다시말하면 衡平의 原則이 無視되어 共產陣營國家들이 韓國에 대해 繼續門戶를 폐쇄하고, 自由陣營國家들만이 北韓과의 接觸을 加速화시킨다면 韓半島를 둘러싼 均衡은 깨지고 東北亞細亞는 勿論 世界의 平和도 파괴될 위험성이 造成될 것이다.

세째, 開放外交는 韓國의 葛藤管理能力的 限界를 벗어나서는 안될 것이다. 理念과 體制가 相異한 國家에게 門戶를 開放할 境遇 國家內部에 葛藤을 必然的으로 수반할 것이다.

이와같은 葛藤은 國民들의 價值觀과 態度에 變化를 가져올것이며, 國家政治秩序에 혼란을 초래하므로써 國家目標을 達成하는데 장애요인이 될 것이다. 따라서 開放政策으로 인한 葛藤을 可能的한 감소시키고, 또한 效率的인 葛藤管理를 (Conflict management) 해나가야 할 것이다. (註 國內의 많은 政治的 役割에 대한 再定義는 勿論 國際政治에 있어서의 國家의 役割에 대한 再定義와 政治指導者 및 그 國家에 政治的으로 關聯된 階層들이 지니고 있는 世界像 (Imape of the world)에 대한 再定義등을 必要로 할것이다)

따라서 韓國의 開放外交政策은 葛藤包容能力 (Conflict tolerance) 과 葛藤管理能力 (Conflict management) 을 全般的으로 증가시키는 방향으로 展開되어야 할 것이며 이것은 開放外交政策의 評價의 準拠가 될것이다.

이상과 같이 開放外交政策의 方向은 韓國의 3가지 外交政策의

基本方向, 즉 統一 自主獨立 国力培養을 基本的으로 追求하면서 自由 友邦과의 紐帶關係, 호혜 평등원칙, 그리고, 葛藤管理能力 (Conflict management) 을 考慮하여 展開해 나가야 할 것이다.

모든 나라에 門戶를 開放하는 開放外交政策은 世界的 모든 나라를 포함하여 外交關係를 수립하는 것으로 理解되나 여기서는 韓半島와 比較的 利害關係를 밀접하게 지닌 蘇聯·中共의 두 敵性國과 中立國等, 3個國家에 限하여 그것도 앞으로의 연구방향의 제시등 기초분야만을 論議하고자한다.

## 2. 對蘇平和外交政策

對蘇平和外交政策을 樹立·推進하기 위하여 우선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을 分析하고 이어서 韓國의 對蘇外交政策의 推進方向을 제시하고자한다.

### (1) 蘇聯의 對韓半島政策.

蘇聯의 對韓半島에 對한 基本政策은 大體로 다음과 같은 3가지側面에서 檢討할 수 있을것이다.

첫째, 歷史的인 傳統성과 地政學的인 立場에서 帝政「러시아」아래 一貫되고있는 南進政策

두째, 「이데오르기」또는 政治的인 面에서 主唱하고 있는 民族解放鬪爭支援政策

세째, 軍事戰略上的 重要性에서 韓半島를 安保上的 완충지대로 유지함으로서 對西方 견제 및 對亞細亞進出을 위한 多目的 政策等으

로 요약된다.

이와같은 蘇聯의 對韓半島 政策은 戰後四半世紀동안 지속되어오고 있는 것으로서 그 本質은 變하지 않고 있으나 同政策을 遂行하는 過程上에 조정되고 있는 對外行爲에는 다기한 流動性和 유연성이 수반되고 있다.

다시말하면 兩進政策은 領土擴張의 概念에서 現實的인 問題解決을 위한 國家間 關係調整내지 改稱의 方向으로 推進하고 있으며, 民族解放支援政策 對西方견제 對亞細亞 進出을 위한 多目的政策역시 積極性을 띠지 않고, 유연적 배려가 先行되고 있음이 70년대 以後의 特徵的인 傾向이라 할 수 있다.

이와같은 蘇聯의 對韓半島政策의 變調는 韓半島를 둘러싼 美·日·中·蘇·4代強國의 競合的 共存關係에서 蘇聯 單獨으로 現狀의 均衡과 秩序를 파괴할수도 없다는 制約性和 特히 中·蘇關係의 對立에서 야기되는 中共의 견제정책에 기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蘇聯은 이러한 制約性을 극복하기 위하여 일련의 화해원칙에 입각한 政策的 배려와 함께, 亞細亞제국간의 關係改善을 期하기 위하여 「亞細亞 集團安保體制」를 構想하는 등, 우회전략을 전개하지 않으면 안되었다. (註, 1972. 3. 20. 15次 蘇聯勞動組合大會. 「브레즈네프」당주석은 「亞細亞集團安保의 기초는 國家間的 關係에서 무력행사의 거부, 주권존중, 국경불가침, 내정불간섭. 안전한 평등 호혜원칙에 입각한 經濟協力 및 그밖의 協力の 幅을 넓게 發展시키는데 있다」고 했다)

## (2) 对蘇 外交戰略

### ① 对蘇外交政策制約要因

对蘇外交戰略을 論하기 前에 韓國의 对蘇外交政策의 限界를 檢討하고자 한다. (정경, 73.9)

첫째, 韓·蘇間 外交關係가 수립된다 하더라도 北韓을 결코 포기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적어도 韓國과 蘇聯의 關係는 日本과 北韓과의 關係를 上廻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韓·蘇間의 國交正常化는 西獨의 동방정책의 効果를 期待할 수는 없다. 왜냐 하면 東獨의 종주국은 明確히 蘇聯이나 北韓의 종주국은 蘇聯과 中共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셋째, 南北韓間의 緊張緩和에 反하여 对蘇外交를 樹立할 수는 없다.

6.23 宣言에 나타난 門戶開放政策은 韓半島統一을 平和的으로 達成하기 위한 加速變數로서 一次的인 의의를 지니는 것으로 解讀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对蘇外交는 韓半島 内部의 緊張緩和을 위한 努力과 병행해야 한다는 데서 对蘇外交政策의 制約点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넷째, 지나친 对蘇一辺道는 韓國과 中共과의 關係를 惡化시키는 要因이 될 수 있다는 점이 또한 对蘇外交政策의 制約点이 되고 있다.

다섯째, 기존우방 유대關係를 해치지 않는 범위내에서 대소외교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는 門戶開放政策에 있어 共產國外交에, 항상 制約要因이 되는 것이라는 것은 앞서 지적한 바 있다.

이와같은 몇가지 對蘇外交政策樹立 및 推進에 있어 制約要因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

## ② 對蘇外交戰略

接近方法에는 戰略的側面에서 多段階的 方法과 全面的 接近方法等으로 区分할 수 있다.

多段階的 接近戰略은 文化的·社会的·經濟 分野等 接近이 용이한 非政治分野로 부터 政治的 分野로 段階別로 接近하는 方法을 말한다.

이境遇엔, 優先 「사할린」교포문제, 어업관계 및 해상사고상호구제에 관한 협상을 제의한 후 점차 그 幅을 넓혀 蘇聯 航路擴張 및 선박의 통과등의 經濟的인 데서 政治的인 것으로 판개개선을 기도 할 수 있을 것이다.

多段階的 接近方案의 이점으로서는

첫째 國民사이에 가치관의 葛藤이 적고,

둘째, 各段階마다 평가를 하므로서 다음단계의 效率的 接觸을 기할 수 있으며,

셋째, 中共·北韓등의 자극을 감소시키면서 推進할수 있다고 보겠다.

이에 反하여 全面的 接近戰略은 위험이 수반되고 國民사이에 가치관의 葛藤이 심하더라도 全面的으로 接近을 시도하는 것이다. 그러나, 장기적으로는, 可能할지 모르나 現實的으로 보아, 앞서 檢討한바 있는 對蘇外交政策制約要因때문에 妥當性을 결여한 方案이라 보겠다.

### 3. 對中共外交政策

#### (1) 中共의 對韓半島 政策

오늘날 中共의 對外交政策 樹立過程에서 基本的 影響을 미칠 安全保障의 측면에서 볼때 韓半島에 관한 限 中共에게 가장 큰 威脅은 蘇聯과 日本의 存在이며 美國은 後退하는 위협으로 考慮되고 있다.

이와 같은 中共의 外交政策視角은 두가지 側面에서 檢討해야 한다.

첫째, 韓國戰爭時 直接的인 武力解決關係에 있던 美國의 對韓公約 水準이 減縮一路에 있다는 것과 美國과의 和解에 따라 韓半島問題에 關한 協助와 타협의 여지를 갖게 되었다는 점.

둘째, 1950年 韓國戰爭當時에도 中共은 韓國問題에 關聯하여 蘇聯과 日本의 存在를 潜在的 競爭者로 意識하고 있었으나 當時에는 蘇聯과의 BLOC 關係가 強國했고 日本은 政治적으로나 軍事的으로 競爭될 수 없는 地位에 있었다. 그러나 오늘에 와서는 이 두세력과 韓半島를 둘러싼 關係가 表面化 競爭關係로 變했고 相互排除의이고 相互 견제적인 것으로 變했다.

더구나 같은 域內國家인 日本의 새로운 政治勢力으로의 등장은 中共에는 하나의 충격적인 事態發展이라 할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中共의 韓半島에 대한 外交政策 決定要因은 中·蘇競爭이란 次元과 中共과 日本의 關係속에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먼저 中·蘇競爭次元에서 檢討하기로 한다.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에서 나타난 對蘇關係의 局面에서 보면 蘇聯과 他強大勢力間의 野合可能性을 제거내지 豫防하는데 力點을 두고

있다.

中共이 美国과의 和解나 日本과의 国交回復을 決心한 데에는 그러한 野合의 可能性을 弱화시킴으로서 蘇聯에 대한 立場을 相對적으로 強化시키고자 하는 意圖가 그 重要な 原因이 있다고 보겠다.

(註 70年代 南北韓關係. 東亞日報社 P 187 )

또한 中共은 오늘날 東南亞에서 蘇聯의 對中共 包圍網形成에 萎縮感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蘇聯의 東南亞 進出을 저지키 위해 腐心하고 있다. 最近 蘇聯의 亞細亞 集團安保體制를 반격하는 一環으로 中共은 「라오스」, 「캄보디아」, 越盟, 北韓 등을 망라하여 蘇聯에 대항하는 共同戰線을 形成하고 있으며 「말레지아」, 比律賓 泰國 등 東南亞諸國과의 關係改善을 적극 추진하기 위해 여러 가지 名目の 招請 및 訪問外交를 계속하면서 經濟援助를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볼때 蘇聯勢力의 東南亞 進出을 저지키 위한 中共의 安保政策에 있어서 韓半島는 중요한 位置를 점유한다고 보겠다.

韓國戰爭以後 中共이 展開해온 對北韓政策의 가장 두드러진 力點이 北韓에 대한 蘇聯의 影響力을 극소화시키는데 있었다는 사실과 또한 그 과정에 있어서 北韓에 대한 소련의 「헤게모니」競爭을 위해 支払한 막대한 努力을 볼때 韓半島에 대한 蘇聯勢力 진출의 檢계가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을 決定짓는 重要 要因이 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음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을 中共과 日本과의 關係에서 檢討하기로 한다.

2次大戦以後 패배한 日本이 美國과의 同盟關係를 維持하면서 再武裝을 서두르고 있다는 사실은 中共의 安保外交政策에 심각한 자극이 아닐 수 없다. 日本의 政治的 軍事的 성장과 美國의 「닉슨·독트린」에 의한 軍事的 후퇴로 인한 韓半島內에 真空狀態를 日本이 메우려라는 蓋然性은 中共에 있어 至大한 關心을 갖게 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다.

中共은 이상에서 본바와 같은 中蘇·中日 關係를 強하게 의식하면서 韓半島政策을 구상하고 있기 때문에 韓半島에서의 南北韓間 平和共存狀態의 지속을 바라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은 理念的인 面에서도 역시 檢討되어야 할 것이다. 두말할 것도 없이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의 理念的 側面은 北韓의 立場을 全적으로 지지하는 데 있다고 보았다.

中共은 1971年 11月 UN 總會에서 UN 決議案의 無効化, UNCURK (UN 韓国統一復興委員會)의 해체를 요구하는 北韓側 主張을 지지하였고, 1972.2月 發表된 上海共同聲明에서도 中共은 北韓의 統一政策을 거듭 지지한다고 하였으며 7.4 共同聲明에 대하여 「今日成統一三原則의 위대한 勝利」라고 지적한 바 있다. 따라서 中共의 對韓半島政策은 中·蘇間 내지는 中·日間的 關係次元과 함께 北韓에 대한 理念的 政治的 支持 立場등의 制約要因을 안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 (2) 對中共 外交戰略

### ① 對中共外交의 制約要因

大體로 對蘇外交政策上 制約 要因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



것으나 對中共 外交政策은 特別히 自由中國과의 紐帶關係가 큰 制約이 될것이다. 그리고 中共의 對蘇 關係를 위한 行態는 長期性을 띠고 있다고 볼 수 있으므로 中共과의 接近계기로 蘇聯을 자극시킬 수 있는 여건의 포착이 있을때 마련될 수 있다는 論理가 成立된다고 본다. 따라서 對中共接近은 事實상 對蘇關係와 直接시켜 設定되어야 할것이다.

## ② 對中共外交戰略

### ㉠ 多段階的 接近

文化, 經濟等 非政治分野의 接近 분야한 것으로 부터 政治的인 分野로 단계별로 接近한다.

이미 韓國調이 제의한 바 있는 大륙봉 共同開發에 관한 것과 中共의 항공기를 평양을 거쳐 서울에 기항하는 問題 어업협정 등 비정치분야에서 우선적으로 接近을 시도한다.

그리고, 北韓을 包含한 中共과의 理解關係를 같이 할 수 있는 부문은 韓國, 中共, 北韓과의 3자회담을 開催하는 方法도 効果的인 일 것이다.

㉡ 時期的으로 보아 蘇聯과의 外交關係를 同時에 같이 効果的인 일 것이며 특히 南北韓間 緊張이 완화되고 相互 分斷이 制度化된 상황하에서 對中共外交를 점진적으로 전개해나 가야 할것이다.

㉢ 日本을 통한 間接 접촉도 効果的인 方法이 될것이다. 예를 들면 日本을 자극하여 中共과 日本間의 接觸을 시도하고 거기에서 韓國問題에 대한 共通的인 見解를 論議하도록 함으로서 間接接觸의 效果를 얻을 수 있다. 現段階로선 考慮해 볼만한 方案이라 보겠다.

#### 4. 對中立國 外交政策

對中立國 外交政策의 重要性和 추진 방향을 간단히 제시하고 具體的 政策은 생략한다. (여기서 中立國이란 주로 亞阿地域을 中心으로 한 非同盟勢力을 의미한다)

##### (1) 對中立國 外交의 重要性

① 1960年 이래 中立指向의인 亞阿地域의 新生國家들이 UN을 비롯하여 國際機構에 대거 참여함으로써 이들내의 權力構造와 政治的인 판도를 변모시키며 國際關係에 있어서 이들 亞阿諸國들이 차지하는 第3勢力으로서 比重이 激增해져 갔다.

② 亞阿地域은 南北韓의 外交的 經絡關係가 치열히 벌어지는 지역이며 우리 對外政策의 特殊한 目的達成에 있어서 直接的으로 노출되는 外交무대로서 重要性이 漸高되어 가고 있다.

③ 특히今年 「알제이」近郊에서 開催된 第4次 非同盟會議은 그들이 채택한 總 24個의 決議中의 하나로 韓國統一에 關한 決議를 채택하고 「韓國分斷은 아시아와 世界의 平和 및 安全에 恒구적인 威脅이 되고 있다. 韓國의 再統一이 平和的으로 實現될 수 있도록 外國의 干섭 중지와 韓國의 自決權을 促求한다」고 主張하는 한편 韓國에서의 美軍 撤收, 「유엔」에서의 韓國問題討議 및 「언커크」解體능을 主唱하는 反韓國的 態度를 취하고 있다.

④ 北韓은 70年代에 접어들어 對中立國 多邊外交를 積極的으로 展開함과 동시에 對中立國外交를 大大的으로 擴大發展시키고 있다.

그들의 中立国外交戰略을 보면 첫째 中立諸国과 左傾西方国家와의 外交關係 拡大 強化함으로서 그들의 國際的 地位를 向上시키는 反面 韓國의 當事国과의 關係強化를 沮止하여 國際的 地位를 弱화시키며,

둘째, 親共勢力이 강한 關係와는 反帝, 反植民主義 鬭爭을 통한 連帶性 強化로 韓半島의 共產化 統一에 있어 最大障礙要因인 美國의 影響力을 후퇴시키고 있으며,

셋째, 中立諸国과 美國을 除外한 西方国家和 經濟, 文化關係를 맺음으로서 同諸国内 共產勢力 養成을 뒷받침하며,

네째, 두개의 韓國觀을 부식함으로서 國際的 承認을 획득 分斷 現象을 固定化시키려 하는 것등을 들 수 있다.

## (2) 對中立国 外交 政策方向

① 종래의 平凡外交를 止揚하고 戰略的인 槩中外交를 試圖해야 한다. 槩中外交란 어떤 地域이나 어떤 勢力圈에 있어 核心勢力이나 國家에 대한 槩中外交를 뜻하며 또한 國家内에서 있어서도 核心이 될 수 있는 政治勢力에 대한 槩中外交를 말한다.

보편주의 原則에 立脚한 平凡外交는 制限된 國家資源을 고갈시키고 形式的 外交關係維持에 급급할 뿐이므로 보다 적극적인 對中立国 槩中外交가 要蘊된다고 본다.

② 全面的 外交戰略樹立이 要望된다.

종래의 政治的인 目的爲主의 部門外交에서 經濟的인 多形目的 爲主의 外交政策으로 轉換해야 한다.

中立國 大部分은 新生獨立國으로서 國家經濟開發에 力點을 두고 있으므로 實利外交關係樹立은 容이할 것으로 본다.

③ 새로운 中立國觀이 要望된다.

종래의 中立國觀을 쇄신하고 開放政策에 따라 對中立國觀의 새로운 認識과 동시에 韓國側의 새로운 Image 를 부각시키도록 對中立國 外交關係를 展開해야 할 것이다.

④ 文化的 의사, 농업기술자 장학생 등을 초청하는 積極적 방안이 요망된다.

⑤ 對中立國에 대한 科學的 弘報活動을 積極化해야 할 것이다.

北韓의 소위 反帝, 反植民 口號가 「아랍」등 中立國의 「反植民」, 反「시오니즘」 口號에 容이하게 침투되고 있음을 주시하고 이에 우리측으로서 사전에 接近方法을 分析 評價하여 科學的인 方法으로 弘報活動을 展開하여야 할 것이다.

## 第 6 節 南北對話의 推進方向

6.23 宣言에 따른 南北對話의 推進方向은 6.23 宣言의 解釋方向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6.23 宣言의 解釋에 입각한 南北對話의 意味는 여하히 달라졌으며 南北對話의 方向은 어떠한가라는 것을 考察하고자 한다.

### 1. 6.23 宣言의 解釋에 비추어본 南北對話의 意味

(1) 6.23 宣言은 南北韓對話 의제에 대한 再發言 效果를 지니고 있다고 보겠다. 南北韓 對話가 시작된 이래 6.23 以前까지는 赤十字會談이나 調節委員會를 통해서 전혀 거론되지 않았던 內容이 6.23 宣言으로 나타났으므로 6.23 宣言의 內容은 南北對話에 대한 間接적으로 의제를 제기한 效果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以後 南北對話의 內容은 종전의 內容과 함께 南北韓 동시에 國際機構 UN 加入 등의 政治的 問題도 포함시켜야 할 것이며 이와 關聯하여 7.4 共同聲明의 原則에 따라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調查等 5 個 分科委員會 同時發足問題도 거론되어야 할 것이다.

(2) 6.23 宣言은 國際情勢를 통한 韓半島 外的 壓力과 民族 同質性을 통한 內的 壓力을 調話시켜 對話를 進行하여야 한다는 (6.23 宣言의 解釋上)의 意味를 지니고 있다고 보겠다.

앞서 6.23 宣言의 解釋 第 1 項에서 言及된 바와 같이 6.23 宣言은 緊張緩和 現狀 高착을 추구하고 있는 國際政治秩序를 韓半

島 統一秩序와 調和시키는 巨視的 統一政策으로서 意味를 지니기 때문에 이와같은 조화「패턴」에서 南北對話를 推進해야 할 것이다.

다시 말하면 理念次元의 相互 갈등을 일으키는 南北韓 相互分裂 Pattern 을 止揚하고 民族同質性을 回復시키는 統一志向 Pattern 을 加速化시키는 方向에서 對話를 추진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統一志向加速度數 가운데 「內政不干渉」 「7.4 共同聲明에 입각한 南北對話推進」 「UN 및 國際機構加入」等 南北韓 共同 關心分野에 대한 우리측 대안을 具體적으로 마련하여 北韓을 설득시키려는 方向에서 南北韓 對話를 進行하여야 할 것이다.

(3) 6.23 宣言의 解釋上 南北對話는 總전의 直接對話와 함께 間接的 우회적 對話方案을 강구해야만 할 것이다.

6.23 宣言의 解釋 第3項에서 6.23 宣言은 北韓의 閉鎖的 體制를 國際社會에 誘導하여 開放體制上 轉換시키고 自由化의 충격을 加하고자 하는 우회 統一政策으로서 解釋한 바 있다. 이에 따라 6.23 宣言에 따른 南北對話도 韓半島를 벗어나 國際社會에서 擴大되어야 하며 따라서 總전의 위원회 중심의 南北對話에서 한걸음 더나가 外交官 무역상인 「스포츠」선수, 記者등 광범위한 對話 推進과 이들의 자질향상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보겠다.

## 2. 南北對話의 推進方向

6.23 宣言에 따른 南北對話의 解決을 通하여 南北對話의 推進方向을 아래와 같이 제시할 수 있다고 보겠다.

(1) 南北調節委員會의 政治, 經濟, 社會, 文化, 調查 등 5 個分科委員會 발족과 國土統一院 中心의 對話推進을 해야 한다.

5 개분과 위원회를 同時에 발족하되 各分科委員會를 統制할 수 있는 統制機構를 準備, 設立하여야 할 것이며 各分科委員會의 의제는 民族同質性回復를 확산시킬 수 있는 것부터 討論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調節委의 人的構成의 改稱問題가 제기된 現時点에서 國土統一院 中心의 對話가 要望된다고 본다.

(2) 우회대화방안의 하나로써 分斷國으로서 UN 에 同時 加入한 東西獨 代表者들을 초청하여 北韓의 閉鎖的 對話態度를 止揚토록 하는 것도 効率的인 것으로 제시할 수 있다. 또한 韓國, 中共, 北韓 또는 韓國, 蘇聯, 北韓間 會談을 開催함으로써 우회적 방안을 효율화 시킬 수도 있다.

(3) 南北對話는 國民의 統一教育이 수반되는 方向에서 추진해야 할 것이다. 統一을 志向하는 國民들의 政治思想의 体系的 組織的 教育을 通해서 南北韓 접촉, 對話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北韓과의 對話가 비록 成功했음지라도 國民들 사이의 갈등과 혼란이 뒤따를 뿐이다.

(4) 南北協商 요원의 양성기관

보다 科學的이고 체계있는 協商 요원 教育을 실시하여

以後 豫想되는 非公式的 國民들의 對話에 대비한 計劃  
이 要望된다. (이에 대해서는 南北協商 요원 教育에  
대한 論文 国土統一院 參照)



## 第 5 章 結 論

韓國統一外交政策의 狀況變數로서 一般的으로 國際情勢와 韓半島 內部情勢를 考慮하는게 보통이다. 다시 말하면 韓國統一外交政策은 國際情勢와 韓半島 內部 情勢의 함수로서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國際情勢가 變하고 國內情勢가 變하면 變化以前의 外交政策은 새로운 變化에 適應할 수 있도록 變해야 한다는 것은 당연한 論理다.

1970年代 以後 國際적으로나, 國內적으로 심각한 變化가 일어났으며, 이에 따라 從來의 韓國統一政策의 方向 轉換은 不可避했던 것이다. 따라서 6.23 宣言의 추진방안도 從來의 統一政策에 對한 檢討와 國內外 情勢의 分析으로 부터 出發하지 않으면 안된다.

6.23 宣言의 背景은 對外的 背景과 韓半島 內的背景으로 나누어 說明할 수 있다. 對外的背景은 韓半島 周辺強大國의 움직임을 中心으로 볼때 US-China detente, Japan-China rapproachment, US-Japan alliance, Sino-China rivalry 를 들수 있으며 對內的背景은 南北赤十字會談, 南北調節委員會談 7.4 共同聲明으로서 說明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같은 韓半島對內外情勢는 6.23 宣言이 內包하고 있는 意味를 巨視的, 우회적 韓國化統一政策等으로 解讀할 수 있는 소지를 可能케 한다고 보겠다. 즉 6.23 宣言은 첫째 民族統一의 目標를 國際政治展開過程에서 追求하는 巨視的 統一政策이며, 둘째 韓半島 統一問題에 대한 國際化를 內部 指向化한 韓國化 統一方案이며

셋째 北韓社會의 閉鎖體制를 國際社會에 유인하여 自由化 衝격을 加함으로써 平和統一 基礎造成을 위한 우회통일정책이라고 解釈할 수 있다.

이와같은 6.23 宣言의 解釈을 通하여 6.23 宣言의 具體的 內容 分析에 따른 問題點은 다음과 같이 集約시킬 수 있다.

- ① 統一主義 原則과 現實分離論理와의 調和問題
- ② 南北韓 平和共存 制度化로 因한 分斷 固着 防止問題
- ③ 南北對話의 再發言 効果에 따른 對話調整推進問題
- ④ 南北韓 UN 및 國際機構加入으로 因한 國際社會의 分斷永 久化, 두개의 韓國 現實化에 따른 問題
- ⑤ 門戶開放政策으로 因한 國內갈등관리問題
- ⑥ 友邦紐帶의 現狀維持와 門戶開放의 現狀 타과의 相互 矛盾 극복 問題

以上의 몇가지 問題點을 6.23 宣言의 解釋된 바에 따라 南北韓 平和共存政策, 對 UN 政策, 門戶開放政策, 南北對話展開方向의 諸局面에 서 解決方案을 모색하면서 6.23 宣言의 추진방안을 강구하였다.

첫째, 南北韓 平和共存은 現時點에서 現實性이 있으며 共存道具 (tool)로서 國際法 聯邦制度 國際機構等을 檢討한 바 國際機構 를 通한 南北韓 平和共存이 가장 現實妥當性이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두째, 對 UN 政策에 있어서는 南北韓同時 UN 加入이 이루어질 경 우 國際적으로 制度化될 「두개의 韓國」 固着을 防止하기 위한 國際的 協同 外交態勢를 갖추어야 하며 對內的 努力으로서 平和統

一을 위한 南北韓交流를 積極 推進하는 方向으로 나아가야 할것이다.

세째, 門戶開放政策은 韓國의 基本外交政策의 限界内에서 推進하되 国内的 갈등관리 能力을 增加시키는 方向에서 推進해 나가야 할것이다.

네째 南北對話方向으로서는 平和共存과 그로 인한 分斷 固着 防止와 統一民主韓國을 樹立하는 平和統一 志向의 對話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이상에서 要約한 6.23 宣言의 推進方案은 具體적으로 提示되지 못하고 部門的으로는 問題로서 남아 있는 것도 發見할 수 있다. 그러나 具體化되지 못한 部門은 앞으로의 研究方向의 제시로서 그 나름대로의 意義를 지녔다고 믿는다.

